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000-000504-14

<http://kostat.go.kr>

ISSN 2288-4718

# 2012년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 사례 집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000-000504-14

ISSN 2288-4718

# 2012년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 사례집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일러두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통계와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통계는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이에 『통계기반 정책평가 제도』는 각 부처에서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필요통계 지표의 구비여부 및 관련통계의 개발·개선계획에 대하여 통계청에 평가를 요청하면, 이를 검토·조정하는 제도로 통계법 제12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각 부처의 통계를 활용한 정책수행 및 통계개발·개선에 활용하도록 2009년부터 주요 평가사례를 수집·정리하여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집은 2012년 한 해 동안 『통계기반 정책평가 제도』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통계의 개발·개선을 권고하였던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법령의 소관 부처가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경우 변경된 부처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용자 여러분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업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9월

통계정책국장 최 성 욱

# 차 례 Contents

## 제1장 통계기반 정책평가 개관

제1절 통계기반 정책평가 개요	3
1. 의의 및 목적	3
2. 평가대상 기관 및 법령	4
3. 주요 평가체계 및 절차	4
제2절 2012년 통계기반 정책평가 현황	9
1. 평가요청 현황	9
2. 평가결과 현황	11

## 제2장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 사례

제1절 기획재정부	17
1.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안	19
제2절 미래창조과학부	25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27
제3절 교육부	31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부개정안	33
2.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39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42

제4절	문화체육관광부	47
1.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 제정안	49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53
제5절	농림축산식품부	59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61
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68
제6절	산업통상자원부	73
1.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75
제7절	보건복지부	79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81
2.	의료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86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90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시행령 제정안	94
제8절	환경부	99
1.	하수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101
2.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106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11
제9절	국토교통부	117
1.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119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124
제10절	해양수산부	133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135
2.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140
3.	소금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안	146

제11절	방송통신위원회	155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57
제12절	원자력안전위원회	163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제정안	165
제13절	금융위원회	169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171
제14절	소방방재청	177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안	179
제15절	산림청	185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187
2.	산림보호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192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198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203

**[ 부 록 ]**

1.	통계기반 정책평가 개요(영문)	211
2.	통계 개발·개선 사례(목록)	217
3.	통계정보 이용방법	220



## 제 1 장

# 통계기반 정책평가 개관

제1장은 통계기반 정책평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2012년 한 해 동안의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 ☑ **제1절** 통계기반 정책평가 개요
- ☑ **제2절** 2012년 통계기반 정책평가 현황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제1장 통계기반 정책평가 개관

## 제1절 통계기반 정책평가 개요

### 1 의의 및 목적

정부에서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수립 및 집행시 다양한 통계를 활용해 왔지만, 적절한 통계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통계기반 정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각 부처가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각 부처가 스스로 이행해야 하지만, 동 제도를 통하여 통계청과 각 부처 간 검토·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동 절차 상 통계청은 제·개정되는 법령과 관련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 및 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부처에 의견을 제시한다. 각 부처는 통계청 검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제·개정 법령에 대한 평가 요청을 하고, 통계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계청과 협의하여 관련 필요통계를 개발·개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기반 정책평가」의 취지는 통계와 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2 평가대상 기관 및 법령

### 1. 평가 대상기관

통계기반 정책평가의 대상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다.

### 2. 평가 대상법령

평가대상 법령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제·개정 법률 및 시행령(대통령령)이다.

한편, 법령 전체의 내용이 통계가 필요 없거나 국가안보, 행정 등 평가가 부적절한 법령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기반 정책평가 운영지침」을 통해 매년 공지한다.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동 법률의 시행령 제·개정 시 함께 평가함으로써 소관기관의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 3 주요 평가체계 및 절차

### 1. 평가체계

일차적으로 법령을 제·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관계기관 협의 시 예비평가 또는 실질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통계청은 동 요청서를 토대로 평가하고,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통계 필요성 여부만 검토하는 예비평가와 통계의 필요성을 전제로 통계지표의 구비 및 적합성 여부, 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실질평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 1) 예비평가

예비평가는 제·개정 법령을 통하여 추진하는 정책이 통계가 필요한지 여부만 평가한다. 각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제·개정 법령의 내용이 통계를 기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입법예고 시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실질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서 통계가 필요한 경우는 실질평가를 요청토록 하고, 불필요한 경우는 실질평가 없이 평가절차를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평가 결과는 아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 ① 평가대상 제외법령

해당 법령을 근거로 시행되는 모든 정책(제도)이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실질평가 면제

해당 법령에 있는 정책(제도)은 통계기반 정책평가가 필요하지만, 법령 제·개정 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할 사항이 아닌 경우

### ③ 시행령 입안 시 평가

신속한 입법 또는 정책(제도)의 구체화 필요 등으로 시행령 입안단계에서 평가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 ④ 통계지표 활용권고

실질평가 대상이지만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관련규정 (법령 또는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작성·구비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 ⑤ 실질평가 대상

제·개정되는 법령을 통해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이 통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2) 실질평가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의 핵심 절차로서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적합성 여부 및 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실질평가 결과는 아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 ① 평가대상 제외법령

해당 법령을 근거로 시행되는 모든 정책(제도)이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통계지표 활용권고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관련규정(법령, 예규, 지침 등)에 따라 작성·구비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 ③ 통계개발·개선

정책에 필요한 통계의 개발·개선에 대하여 통계청과 법령 소관부처 간 이견이 없는 경우이다. 법령 소관부처 제시 의견에 대하여 통계청과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과정에서 합의된 경우, 각 부처는 상세한 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통계청에 제시하고, 통계청은 이를 중기 국가통계 개발·개선의 일환으로 관리한다.

### ④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정책에 필요한 통계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 필요한 통계의 개발·개선 계획에 대하여 통계청과 법령 소관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개발·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법령 소관부처는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통계청의 평가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평가절차

### 1) 평가요청

법령을 제·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예비평가 또는 실질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평가를 요청할 때, 법령 소관부처의 담당부서는 해당기관 통계책임관 또는 통계책임관 운영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평가요청서 외에 법령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정책 관련 참고자료(정책용역보고서, 관계기관 협의 시 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 평가결과 통보

통계청은 각 평가에 대하여 예비평가는 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질평가는 입법예고 만료 시 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

### 3) 이의제기 및 처리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결과 통보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은 이의제기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예비평가는 7일 이내, 실질평가는 2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 평가 절차 흐름도

### 1. 예비평가 요청

-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예비평가요청서(서식1)를 통계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예비평가 요청서, 법령 전문 및 제·개정내용, 산·구조문 대비표 등
  - 각 부처 통계책임관 경우 제출
- 실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실질평가 요청

### 2. 예비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 예비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다만, 평가결과가 '통계지표 활용권고'인 경우에는 입법예고 만료 시까지

### 3. 이의제기 및 재평가

- 제기기간 : 평가결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재평가기간 : 이의제기 접수 이후 7일 이내

### 4. 실질평가 요청

- 제출기간 : 예비평가 결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실질평가 요청서(서식3), 통계개발·개선계획 등

### 5. 실질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처리기한 :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까지
  -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까지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중간평가 결과 통보
-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과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보완

### 6. 이의제기 및 재평가

- 제기기간 : 평가결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소관(관계)기관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 상정·심의

### 7. 평가결과 이행

- 실질평가 결과가 '통계개발·개선 미합의'인 경우,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 상정 시 통계청장의 평가 의견을 함께 제출
- 소관기관은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

## 제2절 2012년 통계기반 정책평가 현황

### 1 평가요청 현황

#### 1. 총괄

2012년은 동 제도 시행 후 5차 연도로 총 요건 건수 821건 중 법률 250건(30.5%) 시행령 571건(69.5%)이며, 제정안 79건(법률 24, 시행령 55), 개정안 742건(법률 226, 시행령 516) 이다.



#### 평가요청 총괄 ('12. 12. 31. 현재)

(단위 : 건, %)

요청건수 (비중)	법 른		시 행 령			
	제정	개정	제정	개정		
821 (100.0)	250 (30.5)	24	226	571 (69.5)	55	516

## 2. 월별 평가요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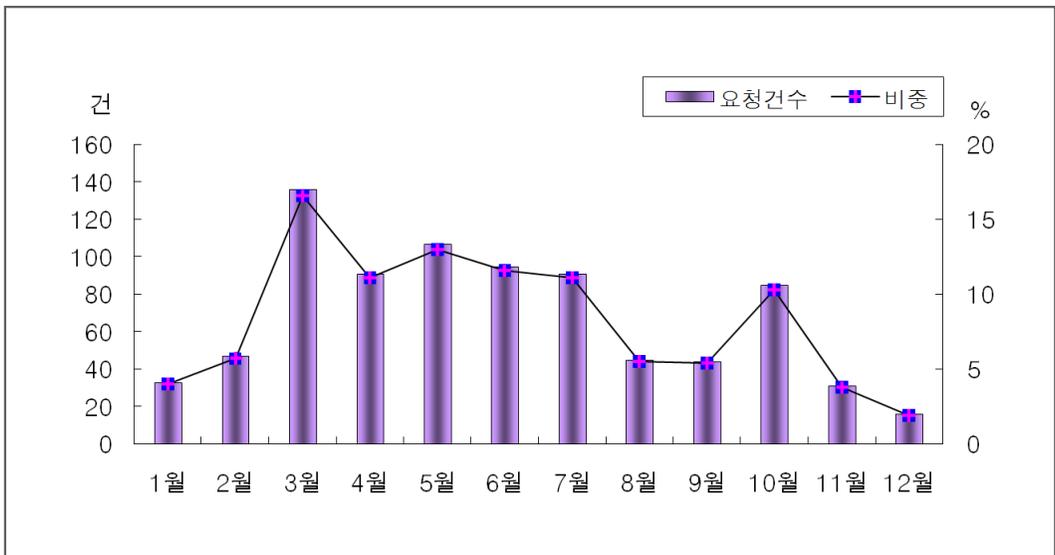
월별 평가요청은 2012년 3월에 136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고, 5월 107건, 6월 95건 순이며, 3개월 동안 평가요청이 전체 요청건수의 41.2%(338건)를 차지하였다. 특히 3월에 평가요청이 전체의 16.6% 이다.



### 월별 평가요청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청건수	821	33	47	136	91	107	95	91	45	44	85	31	16
비중	100.0	4.0	5.7	16.6	11.1	13.0	11.6	11.1	5.5	5.4	10.3	3.8	1.9



## 2 평가결과 현황

### 1. 총괄

2012년 총 821건의 평가요청이 있었고, 2011년 이월된 평가요청을 포함하여 825건을 평가 완료하였으며, 평가요청 건수 중 1건은 2013년으로 이월되었다.



### 평가결과 총괄 ('12. 12. 31 현재)

(단위: 건)

평가요청	'11년에서 이월	'13년으로 이월	평가완료
821	5	1	825

### 2. 유형별 평가결과 현황

평가 완료된 825건 가운데 예비평가 결과는 571건(69.2%)이고 실질평가 결과는 254건(30.8%) 이었다.

예비평가 결과 유형의 경우 실질평가 면제가 519건(90.9%)으로 가장 많았고, 실질평가 결과 유형은 통계지표 활용권고가 218건(85.8%)으로 가장 많았다.



### 유형별 평가결과 현황

(단위: 건, %)

평가완료 (비중)	예 비 평 가			실 질 평 가			
	실질평가 대상	실질평가 면제	기타	통계지표 활용권고	통계 개발·개선		
825 (100.0)	571 (69.2)	20	519	32	254 (30.8)	218	36

### 3. 평균 평가 소요기간

평가요청서 접수 일로부터 예비평가는 10일, 실질평가는 입법예고 만료시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평균 소요기간은 예비평가 5.1일, 실질평가 6.1일로 동 소요기간을 준수하였다.



#### 평균 평가 소요기간

(단위 : 일)

	예비평가	실질평가
평균 평가소요기간	5.1	6.1

#### 4. 부처별 평가 종합 현황



### 부처별 평가 종합 현황(2012년)

(단위: 건)

소관 부처	평가 요청	평가 완료	예비평가				실질평가		
			실질 대상	실질 면제	기타	통계지표 활용권고	통계 개발·개선		
전 체	821	825	571	20	519	32	254	218	36
국 무 총 리 실	4	4	2	-	2	-	2	2	-
기 획 재 정 부	43	43	33	-	30	3	10	9	1
미 래 창 조 과 학 부	13	13	10	1	8	1	3	2	1
교 육 부	67	68	42	1	39	2	26	22	4
외 교 부	4	4	4	-	2	2	-	-	-
통 일 부	1	1	1	-	1	-	-	-	-
안 전 행 정 부	20	20	16	-	15	1	4	4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46	46	37	-	32	5	9	7	2
농 립 축 산 식 품 부	41	42	27	-	25	2	15	12	3
산 업 통 상 자 원 부	45	45	31	1	30	-	14	12	2
보 건 복 지 부	63	64	39	5	33	1	25	20	5
환 경 부	52	52	29	2	27	-	23	20	3
고 용 노 동 부	29	29	23	-	23	-	6	6	-
여 성 가 족 부	20	20	16	-	16	-	4	4	-
국 토 교 통 부	147	149	112	3	103	6	37	34	3
해 양 수 산 부	58	58	41	2	37	2	17	14	3
국 가 보 훈 처	9	9	6	-	6	-	3	3	-
식 품 약 품 안 전 처	10	10	6	-	6	-	4	4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20	20	10	1	9	-	10	9	1
공 정 거 래 위 원 회	8	8	6	-	6	-	2	2	-
금 용 위 원 회	28	28	15	-	14	1	13	12	1
국 민 권 익 위 원 회	1	1	1	-	-	1	-	-	-
원 지 력 안 전 위 원 회	5	5	3	1	2	-	2	1	1
통 계 청	2	2	1	-	1	-	1	1	-
경 찰 청	7	7	6	-	5	1	1	1	-
소 방 방 재 청	20	20	16	2	14	-	4	2	2
문 화 재 청	9	9	5	-	3	2	4	4	-
산 림 청	14	14	7	1	6	-	7	3	4
중 소 기 업 청	18	17	14	-	14	-	3	3	-
특 허 청	11	11	9	-	8	1	2	2	-
기 상 청	4	4	2	-	2	-	2	2	-
해 양 경 찰 청	2	2	1	-	-	1	1	1	-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제 2 장

###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 사례

- ▶ 제1절 기획재정부
- ▶ 제2절 미래창조과학부
- ▶ 제3절 교육부
- ▶ 제4절 문화체육관광부
- ▶ 제5절 농림축산식품부
- ▶ 제6절 산업통상자원부
- ▶ 제7절 보건복지부
- ▶ 제8절 환경부
- ▶ 제9절 국토교통부
- ▶ 제10절 해양수산부
- ▶ 제11절 방송통신위원회
- ▶ 제12절 원자력안전위원회
- ▶ 제13절 금융위원회
- ▶ 제14절 소방방재청
- ▶ 제15절 산림청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제 1 절

# 기 획 재 정 부

1.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정책(제도)명	협동조합 활동 촉진
입법예고기간	2012. 05. 07. ~ 2012. 06. 18.
소관기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협동조합 등에 관한 정의·명칭·법인격·설립 등에 관한 규정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함
  -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협동조합정책심의회를 설치
  - 협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공직선거 관여 금지
-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설립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원 및 회원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 되며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안 됨
  -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짐
  - 탈퇴(제명포함) 조합원의 지분(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우 출자금) 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손실액 부담에 관한 사항 규정
- 총회, 이사회, 임원 등 기관 구성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등이 가능하며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음
  -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는 금융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납입 출자금 총액 한도에서 소액대출(개인별 소액대출 한도 : 100만원)과 상호부조(100만원)를 할 수 있음
- 회계에 관한 사항
  - 결산결과와 공고, 법정적립금(협동조합 :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 사회적협동조합 : 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 및 임의적립금, 손실금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합병·분할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권리·의무는 승계되고, 해산시 청산인은 14일 이내 시·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등기에 관한 사항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에 관한 사항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협동조합 정책의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및 영안 제6조에 규정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할 계획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협동조합 현황 - 조합 수, 조합원 수 등 - 자본금, 매출액, 잉여금 등	통계 개발계획 (기획재정부)
	○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 조합 수, 조합원 수 - 자본금, 매출액, 잉여금 등 - 소액대출 등 및 상호부조 사업 현황	

### 〈통계개발 세부계획〉

#### 협동조합 실태조사

##### ○ 조사목적

-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법적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 조사대상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조사항목
  - 협동조합의 수, 조합원 수, 직원수, 자본금, 인력,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 작성주기
  - 3년마다 실시
- 조사체계
  - 협동조합 → 시·도 → 기획재정부
  - 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 추진일정
  - 계획수립 : 계획수립 여부 미정
  - 조사시기 : 2013년 하반기 예정
  - 공표시기 : 2014년 상반기 예정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협동조합 활동 촉진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 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제 2 절

# 미래창조과학부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 적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기여
정책(제도)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발전 및 이용 촉진
입법예고기간	2012. 07. 10. ~ 2012. 08. 20.
소 관 기 관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정책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의
    - ※ “클라우드컴퓨팅”이란 논리적인 분할 또는 결합을 통해 집적·공유된 정보통신 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축적으로 제공하여 정보통신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컴퓨팅을 말함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
  -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 활성화, 연구개발 촉진, 인력양성, 해외 진출,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 마련
- 클라우드컴퓨팅 정책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 및 통계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기반 조성 등
  - 연구개발 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업 신고 등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업 신고·폐지 및 양수합병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용과 기술지원 및 정보보호인증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인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안전지침 고시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및 이용사실 공개
  - 서비스 침해사고 시 정보 보존 및 복구 노력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
- 기타 협회설립, 서비스 제공자의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 및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발전 및 이용 촉진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통계개발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 총매출액, 종사자수, 자본금, 영업비용 등	통계 개발계획 (미래창조과학부)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 ○ 조사목적

- 클라우드컴퓨팅 및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과 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 법적근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 ○ 조사대상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 ○ 조사사항

- 총매출액, 종사자수, 자본금, 영업비용, 유무형자산 등 일반 항목과 클라우드 서비스별 매출액, R&D 등 투자비용 등 부문별 세부항목

##### ○ 보고체계

- 위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 추진일정 :

- 계획수립 : '12년 말
- 조사실시 : '13년 년중
- 결과보고 : '14년 1월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발전 및 이용 촉진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제 3 절

# 교 육 부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부개정안
2.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부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산학협력 촉진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입법예고기간	2011. 11. 9. ~ 2011. 11. 29.
소관기관	교육부 산학협력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산학협력”을 “산학연협력”으로 명칭 변경
-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 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권 취득·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권 취득·유지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가능
  -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 사업화 및 계약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관리소요 비용 확보 노력
- 산학협력단의 업무범위 확대
  - 기존 업무 이외에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조정, 교수 및 학생의 교내 창업 지원,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지원 등 추가
-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활성화
  - 산학협력단(또는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가능

-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
- 자회사 설립근거 마련 등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 보유기술의 산업체 이전, 기술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의 결성, 기술이전 사업화와 직접 관련 업무 및 자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
-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의 공동 활용 제도 도입 등 학연 간 교류 촉진
  - 대학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 (학연교수제)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공립대학의 장은 교원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 가능
  - 국가는 대학과 연구기관 간 시설·장비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수립·추진
  -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 공동 활용 대상 기관 및 활용 협약체결 등 규정
-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근거 규정
  - 산학연 협력촉진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통계작성·관리
  - 산학연협력 정책의 수립·집행상황·효과의 평가를 위한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규정
  - \* 산업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함
-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사항 규정
  - 현행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 양성)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에 신설
-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의 범위를 규정
  -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 산업기술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취업 지원
  - 그 밖에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국·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 보칙 부분
  - 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대상 법인 또는 단체
  - 별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비밀유지, 별칙
- 산업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 삭제
  - 중앙산업교육심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연구위원, 간사, 수당 등
- 학교기업 관련 조항 신설
  -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통합
  -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계획 등, 학교기업의 소재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 지출범위,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학교기업의 예산 및 회계처리 등



## 주요 개정안

###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②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4.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연 간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유지·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산학연 협력 촉진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및 성과 파악을 위해 산학연 기초 현황, 산학연협력 활동 실태, 산업기술인력 양성 현황 등에 관한 통계지표의 구비현황 및 통계 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실질평가를 요청함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산학연 협력 촉진 정책의 집행 및 성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 기초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별 산업교육기관 및 산업교원·학생 수</li> <li>- 유형별·규모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수</li> <li>- 산학협력 관련 시설·장비 보유수 등</li> </ul> </li> </ul>	행정자료, 대학산학협력백서 (한국연구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연구기관 및 연구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별·전공별·성별·연령별 연구원 수 등</li> </ul> </li> <li>-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보유수</li> </ul>	연구개발활동조사 (10501,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협력 활동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연교수 현황</li> <li>- 산학연간 인력 공동활용 현황</li> <li>- 산학연 간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실적</li> <li>-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 실적 등</li> </ul> </li> </ul>	통계 개선 계획 (교육부) 산학연협력활동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단의 지적재산권 취득·관리 비용 및 정부지원 실적</li> </ul>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가능 (교육부)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집행 및 성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술인력 양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실시 건수 및 참여율</li> <li>-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창업지원 건수 등</li> </ul> </li> </ul>	구비가능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현황 등</li> </ul>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10503, 교육부)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 ○ 조사(보고)목적

-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산학협력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학정보공시제도와 연계하여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자료 확보

####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동법 제39조의2(산학협력 통계의 작성)
- 조사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의해 설립한 학교(422개 대학) 및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보고체계 : 대학(산학협력단) ⇨ 한국연구재단 ⇨ 교육부(산학협력과)

#### ○ 조사(보고)사항 : 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의 조사항목(18개항 67개 세항) 외에 추가 조사항목

- 학연교수 현황, 산학연간 인력 공동 활용 현황
- 산학연 간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실적
-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 실적 등

#### ○ 작성(보고)주기 : 매년

#### ○ 추진일정

- 계획수립 : 2012. 5월
- 조사시기 : 2012. 6월~8월
- 결과공표 : 종합결과 공표 12월 / 일부 항목(특히, 기술이전) 8월

## 라 평가결과

###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교육부가 제시한 통계개발 계획에 동의하며,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평가를 위해서 상기 통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필요 통계지표는 통계개발 계획과 소관 행정자료 등을 통하여 구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2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 가 대상법령

목 적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책(제도)명	수석교사제 도입
입법예고기간	2011. 12. 19. ~ 12. 30.
소 관 기 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 수석교사제 도입

- 현행 교사 자격 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 향상,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된 수석교사제 도입
-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수여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



#### 주요 개정안

##### [법률]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제22조(교원의 자격)**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 전문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령]**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별표 1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수여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유치원 수석교사제의 효과적인 집행 및 성과 파악을 위해 유치원 수석교사 운영 실태에 관한 통계지표의 구비현황 및 통계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실질평가를 요청함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수석교사제 관련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유치원 현황 - 유치원 교원수(국·공·사립별, 지역별, 직위별) - 원아수별 유치원수(국·공·사립별, 지역별)	교육기본통계 (33401, 한국교육개발원)
	○ 수석교사 운영 실태 - 지역별 수석교사 자격 수여자수 - 수석교사 수(국·공·사립별, 지역별) - 원아수별 및 학급수별 수석교사 채용현황(국·공·사립별, 지역별)	교육기본통계 통계개선계획 (한국교육개발원)

**<통계개발 세부계획>****□ 수석교사 운영실태****○ 조사(보고)목적**

- 유치원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각 시·도교육청 및 국·공·사립유치원의 수석교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현장 적합성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유아교육법 제22조
- 조사대상 : 유치원교사
- 보고체계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교육부

**○ 조사(보고)사항**

- 지역별 수석교사 자격 수여자 수
- 수석교사 교원 수(국·공·사립유치원, 시·도별)
- 원아수별 및 학급수별 수석교사 채용 현황(국·공·사립별, 시·도별)

**○ 작성(보고)주기 : 매년, 4월 1일 기준****○ 추진일정**

- 계획수립 : 2012. 3~6월
- 조사시기 : 2013. 4월
- 결과공표 : 2013년 9월

**라 평가결과****○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교육부가 제시한 통계개발 계획에 동의하며,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평가를 위해서 상기 통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필요 통계지표는 통계개발 계획과 소관 행정자료 등을 통하여 구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책(제도)명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유아수용계획 수립
입법예고기간	2012. 5. 15. ~ 2012. 5. 25.
소관기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유아수용계획 수립
  -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유아수용계획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 설립인가를 제한하며, 유아수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내용을 유아교육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주요 개정안

##### [대통령령]

- 제17조(유아수용계획) ①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절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유아수용계획에 우선하여 포함시킬 것
  -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유치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 나. 유치원을 통폐합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
- ④ 유아수용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학 희망 유치원의 유형
  - 가. 공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 나. 사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 다. 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중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되는 유치원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세부 절차·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유치원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유아 수용 계획 수립의 효과적인 집행 및 성과 파악을 위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등에 관한 통계 지표의 구비현황 및 통계 개발계획을 적성하여 실질평가를 요청함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및 집행성과파악	○ 영유아 수 추이	장래인구추계 (10133, 통계청)
	○ 유치원 현황(설립주체별) - 유치원 수, 유치원 정원 수, 원아 수 등	교육기본통계 (33401, 한국교육개발원)
	○ 유치원 취원 수요 현황 - 유치원 정원 수 - 유치원 취원 희망여부 - 공·사립유치원 및 단·병설유치원 선호 수요 등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 통계개발계획 (교육부)
	○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행정자료* (교육부) * 제도시행 후 구비 가능

〈통계개발 세부계획〉

□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조사통계)

○ 조사(보고)목적

- 조사 결과를 유아수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유치원 설립인가 제한 여부를 판단하고, 유치원 신·증설 정책 수립 등에 활용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영안 제17조의4
- 조사대상 : 0세부터 4세까지의 영유아 보호자 중 1인
- 보고체계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교육부

○ 조사(보고)사항

- 취원 대상 아동보호자 대상 유치원 취원 희망여부
- 공·사립 및 단·병설유치원 선호 수요 등

○ 작성(보고)주기 : 5년

○ 추진일정

- 계획수립 : 2012년 12월
- 조사시기 : 2013년 6월
- 결과공표 : 2013년 9월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교육부가 제시한 통계개발 계획에 동의하며,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평가를 위해서 상기 통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필요 통계지표는 통계개발 계획과 소관 행정자료 등을 통하여 구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제 4 절

# 문화체육관광부

1.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 제정안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작은도서관 활성화
입법예고기간	2012. 03. 23. ~ 2012. 05. 02.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진흥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작은도서관은 기존 승인통계인 ‘전국도서관통계’의 조사범위에 포함되므로 기존 통계에 도서관의 구분만을 추가하면 별도의 통계작성 변경 승인절차 없이 통계자료의 구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집행 및 성과 파악	○ 도서관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도서관수 등	전국도서관통계 (11316, 문화체육관광부)
	○ 작은도서관 현황 - 설립주체별, 운영주체별 작은도서관수 - 도서자료수, 도서관면적, 좌석수, 직원 및 예산 현황, 개관일수, 개관시간, 이용자수, 대출권수 등	통계개발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실태조사
	○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지원액 등	행정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작은도서관실태조사

##### ○ 조사목적

-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현황 파악의 기초자료 제공

##### ○ 조사대상(조사대상, 법적근거, 조사체계)

- 조사대상 : 전국 모든 작은도서관
- 법적근거 : 「작은도서관법」 제12조
- 조사체계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에 입력·보고

##### ○ 조사사항

-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 등 작은도서관 기본 정보
- 도서관 소장자료 현황

- 면적, 좌석수 등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정규직원, 자원봉사자, 사서배치 현황
- 도서관 운영 예산지출 및 수입 내역
- 개관일수, 이용자수 등 도서관 이용 및 이용자에 관한 사항
- 공공도서관과 연계, 공공도서관 지원 및 공유 프로그램 등

○ 작성주기

- 매년

- 개발방법 : 「전국도서관통계」 조사항목에 도서관 구분\*을 추가하여 조사
- \* 공공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영도서관, 병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계획수립 : 전국도서관통계 시스템 활용방안 검토('12.5월)
- 조사시기 : 시스템 입력 및 집계표 설계 배포('12 하반기)
- 공표시기 : '13년 초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통계개발 계획에 동의하며, 상기 통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통계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

##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입법예고기간	2012. 03. 25. ~ 2012. 05. 09.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5년), 세부시행계획(1년)을 수립·시행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
- 매년 분야별로 이스포츠의 현황 및 이용 실태조사 실시

#### ○ 지원사업

-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이스포츠 시설 구축비 지원
-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종목선정기관,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등의 지정 및 지원
-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등 지원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 또는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진흥에 필요한 경기 및 방송, 연구 등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①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이스포츠연맹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
- ② 정부는 국내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이스포츠 실태조사, 이스포츠 시설지원, 이스포츠관련 전문인력양성 등의 집행 및 평가를 위해 통계기반의 정책관리가 필요함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이스포츠 진흥 정책의 기초현황 및 성과 파악	○ 이스포츠 현황 - 게임단 및 프로그래머 수 - 연도별, 지역별 대회 현황 및 관람객 수 - 종목 현황	통계개발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이스포츠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 이스포츠시설 현황 ○ 이스포츠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현황	행정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 현황 -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콘텐츠산업통계조사 (11308,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이스포츠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 ○ 조사목적

- 이스포츠 관련 구체적인 동향과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스포츠 진흥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조사대상(조사대상, 법적근거, 조사체계)

- 조사대상
  - 이스포츠 게임단 및 프로게이머
  - 게임방송사(인터넷방송 포함) 및 게임리그(대회) 관련 종사자
  - 이스포츠 종목사 및 종사자
  - 이스포츠 관련 교육기관, 학생(피교육생), 강사 및 교수진
  - 이스포츠 관람객 및 이스포츠방송 시청자
- 법적근거 :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사체계 : 위탁조사(위탁기관 선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 ○ 조사사항

- 이스포츠 게임단 및 프로게이머 현황
- 게임방송사(인터넷방송 포함) 운영 현황 및 게임리그(대회) 현황
- 이스포츠 종목 현황 및 게임의 이스포츠화를 통한 효과 등
- 관련 교육기관, 교육과정·교과과정(커리큘럼), 강사 등 교수진, 전문인력 양성 시설·설비 운영 현황(관련 경비 등), 수료 후 진로 등 공급부문 동향
- 이스포츠 관련 시설 구성 및 운영 현황
- 이스포츠 관람객 및 방송 시청자의 선호도, 참여도 등 이용 현황

#### ○ 작성주기

- 매년

####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계획수립 : '13년 3월
- 조사시기 : '13년 4월~9월
- 공표시기 : '13년 10월~11월

## 라 평가결과

###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정책의 기초현황 및 성과 파악을 위해서 상기 통계 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필요 통계지표는 통계 개발계획과 소관 행정자료 등을 통하여 구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제 5 절

# 농림축산식품부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입법예고기간	2012. 02. 15. ~ 2012. 03. 26.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
  -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경영개선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사업자에게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 농업과의 연계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쌀가공사업자가 쌀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쌀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가공용 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및 사업경비 지원

- 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 쌀가공품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공업자에 대해 예산지원
-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쌀가공업의 신고
  - 쌀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통계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조사대상 : 쌀가공품 원료 공급 및 사용 현황, 생산·유통·판매 현황, 수출입 현황, 제조·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등 쌀가공산업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 통계의 작성·관리 대행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과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쌀가공산업의 집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의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 실시
  -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 홍보전시관 등 설치·운영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의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설치·운영 및 경비 지원
- 유통센터 등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품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 및 경비 지원
- 세계화 촉진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품평회에서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지원
- 우수 쌀 이용 촉진
  -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쌀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며 그에 따른 경비 지원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6.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이 조에서 “가공용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

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용쌀 재배단지(이하 이 조에서 “재배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쌀 가공품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방법·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육훈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의 촉진 및 쌀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우수 쌀 이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업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쌀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 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통계와 정책간 연계강화 및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통계에 기반한 정책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쌀 가격 현황 - 연도별 가격 추이	행정자료 (통계청, 산지쌀가격조사)
	○ 농가소득 현황 - 연도별 농가소득 추이	농가경제조사 (10142, 통계청)
	○ 쌀 산업현황 - 생산량 - 수입량, 소비량, 재고량 등	농작물생산조사 (11404, 통계청) 행정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쌀가공산업 현황 -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쌀가공품 원료 공급 및 사용량, 쌀가공품 생산·유통·판매량, 쌀가공품 수출입량 등	통계 개발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산업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용쌀 재배단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단지 수, 재배단지 면적, 재배단지 생산량, 경비지원 실적 등</li> </ul> </li> <li>○ 쌀가공업 신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지역별</li> </ul> </li> <li>○ 쌀가공사업자 지원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분야별 경영개선 및 쌀가공품 생산 지원 실적</li> </ul> </li> <li>○ 우수 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생산량 및 쌀 가공품원료 사용량</li> </ul> </li> <li>○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기관 수, 강사 수, 교육인원 수 등</li> <li>- (전문인력양성) 기관 수, 강사 수, 전문인력 수 등</li> </ul> </li> </ul>	<p>행정자료 (농림축산식품부)</p>
--	----------------------------------------------------------------------------------------------------------------------------------------------------------------------------------------------------------------------------------------------------------------------------------------------------------------------------------------------------------------------------------------------------------------------------------------------------------------------------------------------------------------------------------------------------------------------------------------------------------------	---------------------------

<p><b>&lt;통계개발 세부계획&gt;</b></p> <p><b>□ 쌀가공산업실태조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사목적</b> : 쌀가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li> <li>○ <b>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 쌀 가공품 생산·유통·판매업체, 소비자 등</li> <li>- 법적근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통계조사)와 그 시행령 제9조(통계의 작성 관리 등)</li> <li>- 조사체계 : 표본사업체 → 조사 대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li> </ul> </li> <li>○ <b>조사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가공품 원료 공급 및 사용현황</li> <li>- 쌀가공품 생산·유통·판매현황</li> <li>- 쌀가공품 수출·입 현황 등</li> </ul> </li> <li>○ <b>작성주기</b> : 매년</li> <li>○ <b>추진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부터 1/4분기 조사계획 수립 → 2/4분기 현장조사 실시</li> </ul> </li> </ul>
-----------------------------------------------------------------------------------------------------------------------------------------------------------------------------------------------------------------------------------------------------------------------------------------------------------------------------------------------------------------------------------------------------------------------------------------------------------------------------------------------------------------------------------------------------------------------------------------------------------------------------------------------------------------------------------------------------------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통계개발 계획에 동의하며, 상기 통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통계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도 1/4분기 중에 이행 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

## 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책(제도)명	발농업직접지불제도
입법예고기간	2012. 02. 03. ~ 2012. 02. 2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발  
토양보전 등을 위하여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지급대상농지 : 공부상 밭(단, 농지법에 근거하여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등 제외)
  - 지급대상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 지급대상자 :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단, 대상밭작물 재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와 소득이 전체가구소득 평균이상인 도시거주자 제외)
  - 지급대상자 등록 : 발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또는 동장에게 등록 신청
  - 등록사항 변경사항 신고 등 : 발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지면적 등이 변경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

- 발농업보조금 지급요건, 산정기준 등
  - 지급요건 : 발농업보조금 등록자 중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급대상 작물을 생산할 것,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산정기준 : 지급단가 × 지급대상 농지면적
- 발농업보조금 지급 및 환수
  -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지급요건을 확인한 후 발농업보조금 지급
  - 농업인 등이 거짓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농업직불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기 지급금액은 환수
- 전업농업인 등 용어 정의 재정립 및 발농업 용어 정의 신설
- 발농업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발농업보조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등



## 주요 개정안

### [대통령령]

**제40조의2(발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농업을 하는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밭의 토양보전 등을 위하여 발농업을 하는 농업인등에게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하 “발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40조의5(발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① 발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자치구 내 2개 이상의 읍·면 또는 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의7(발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① 발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발농업보조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발농업을 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등에 관한 통계개발 필요하며, 정책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는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등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추가 통계자료 개발이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 및 지자체 실적 보고 등을 통해 발굴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발농업직접지불금 제도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농가 수	농림어업조사 (10145, 통계청)
	○ 농가소득	농가경제조사 (10142, 통계청)
	○ 밭 면적 및 작물별 재배면적 - 연도별, 지역별	농업면적조사 (11433, 통계청)
	○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재배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작물별 등록 농가 수 및 재배 면적	통계개발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배현황 실태조사
	○ 발농업보조금 지급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작물별 지원 농가 수 및 금액 ○ 부적정한 보조금 회수 실적 - 연도별, 지역별, 작물별 회수 농가 수 및 금액	행정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농작물 재배 현황 실태조사

- **조사목적** : 실제 지급대상농지에서 지급대상 작물의 재배 현황을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 편성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조사대상 :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등록 신청 농지
  - 법적근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안 제44조제3항
  - 조사체계 : 특별자치도·시·군·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사사항**
  -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 면적
  - 경작여부
- **작성주기** : 매년
- **추진일정**
  - '12년 3/4분기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통계개발 계획에 동의하며, 상기 통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통계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도 1/4분기 중에 이행 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제 6 절

# 산업통상자원부

1.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계량·측정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측정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관련 산업육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정책(제도)명	계량·측정 산업 육성
입법예고기간	2012. 5. 17. ~ 2012. 6. 26.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 계량·측정 산업 육성

- 계량·측정 산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



### 주요 개정안

#### [법률]

**제66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측정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국내외 계량·측정 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계량·측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계량·측정관련 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4. 계량·측정기술의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측정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8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등록사항, 제12조제3항의 인정사항 및 제13조제1항의 신고사항
2. 제19조제1항의 형식승인 이력현황
3. 제31조제1항의 검정, 제32조제1항의 재검정, 제33조제2항의 수리한 계량기의 검정 현황
4. 제39조제1항의 정기검사 현황
5. 제44조제1항의 교정대상 측정기의 교정 이력현황
6. 제48조제1항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사업자 및 품목 현황
7.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판품 조사 결과
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8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계량증명업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
4. 제73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장

②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을 위한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계량기 사업자·형식승인·검정기관 현황, 형식승인·검정결과 등에 대한 통계개발이 필요하므로 실질평가 대상임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파악	○ 계량·측정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계량·측정 산업 현황 (제조업자, 사용업자, 수리업자 등)</li> <li>- 계량·측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li> <li>- 계량·측정관련 전문인력의 현황</li> <li>- 계량·측정기술의 사업화 현황 등</li> </ul>	통계개발 계획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산업실태조사
	○ 계량기 검정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류별·연도별 등</li> </ul>	행정자료 (기술표준원)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및 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변경, 취소 등</li> </ul>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계량·측정 산업 실태조사

##### ○ 조사목적

- 계량·측정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리

##### ○ 조사대상(조사대상, 법적근거, 조사체계)

- 조사대상 : 계량·측정 관련 단체 및 기관, 사업자 등
- 법적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66조(실태조사)
- 조사체계 : 위탁조사(한국계량측정협회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조사사항

- 국내외 계량·측정 산업의 현황(제조업자, 사용업자, 수리업자 등)
- 계량·측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현황

- 계량·측정관련 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 계량·측정기술의 사업화 현황 등

○ 작성주기

-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조사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계획수립 : '13년 이후
- 조사시기 : '13년 이후
- 공표시기 : 미공표(내부 자료로 활용)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계량·측정산업의 육성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을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 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제 7 절

# 보건복지부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2. 의료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시행령 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 적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입법예고기간	2012. 02. 17. ~ 2012. 03. 08.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관리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 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노숙인 지원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 거주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 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 사업을 자활지원사업, 고용촉진사업, 공공일자리사업 등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노숙인 등에게 고용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 노숙인에 대한 응급상황 및 응급조치
  - 결핵, 감염병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할 우려가 높거나 거라·공원·역사부근 등에 방치되어 동사(凍死)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응급조치의 범위를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응급실로의 이동, 입원 등 필요한 일체의 조치로 규정하는 한편, 관련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로 함
- 교육 및 준수사항
  -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노숙인 등을 유기, 방임행위, 구걸, 영리목적, 강제 입·퇴소 등을 금지행위 규정
  - 노숙인시설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벌금 및 과태료 부과규정
  - 금지행위 위반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 노숙인급식시설 및 자활지원사업 신고의무 위반자는 100만원이하, 노숙인시설과 유사한 명칭 사용자는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
  4. 노숙인시설의 설치·확보 및 주거지원·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노숙인 등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인 등 또는 노숙인시설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3. 노숙인 등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퇴소시키는 행위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노숙인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숙인 등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 개발 개선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의 기초 현황 및 성과 파악	○ 노숙인 등 실태조사 - 연도·지역·성·연령·거주형태별 노숙인 수 - 노숙인 등 장애 및 질병사항 - 주거·급식·의료·고용 등 노숙인 지원사항	통계개발 계획 (보건복지부)
	○ 노숙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 연도·지역·종류별 시설 수 - 직종별 종사자 수	행정자료 (보건복지부)
	○ 노숙인복지시설 이용자 수 - 연도·지역·성·연령·종류별 등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노숙인 등 실태조사

#### ○ 조사목적

- 노숙인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
-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 조사대상(조사대상, 법적근거, 조사체계)

- 조사대상 : 노숙인
- 법적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조사체계 : 위탁조사(위탁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

#### ○ 조사사항

- 연도·지역·성·연령·거주형태별 노숙인 수
- 노숙인 등 장애 및 질병사항
- 주거·급식·의료·고용 등 노숙인 지원 사항

#### ○ 작성주기

- 5년 단위의 정기조사 및 현황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조사 실시

####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계획수립 : '13년 상반기
- 조사시기 : '13년 상반기
- 공표시기 : 미공표(내부 자료로 활용)

## 라 평가결과

###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정책의 기초현황 및 성과 파악을 위해서 상기 통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필요 통계지표는 통계 개발계획과 소관 행정자료 등을 통하여 구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2 의료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 가 대상법령

목 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정책(제도)명	의료인의 면허 및 취업상황 관리
입법예고기간	2012. 02. 16. ~ 2012. 03. 07.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의료인 면허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면허자는 당해 연도에, 신규 면허 이외의 자는 최초 신고 이후 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함
-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교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함
- 의료광고 심의
  -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인터넷언론, 인터넷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사전심의 대상인 인터넷매체로 정함



## 주요 개정안

### [법률]

**제25조(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동 법령의 개정으로 도입·변경되는 의료인의 면허 및 취업상황 관리 정책의 기초현황 및 성과 파악을 위해 의사 등 의료인 면허 및 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 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의료인의 면허 및 취업상황 관리 정책의 기초현황 및 성과파악	○ 의사 등 의료인 면허 및 취업현황 - 연도별, 지역별, 성별, 의료(근무)기관별 취업자 수, 보수교육 이수상황 등	통계개발 계획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및 의료인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종류별 등	행정자료 (보건복지부)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의사 등 의료인 면허 및 취업현황

##### ○ 보고목적

-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통해 의료인 자격관리 및 증장기 인력수급 체계화

##### ○ 보고대상(보고대상, 법적근거, 조사체계)

- 보고대상 : 의료인

- 법적근거 : 의료법 제25조

- 보고체계 : 의료인 → 의료인증양회 → 보건복지부

##### ○ 보고사항

- 연도별, 지역별, 성별, 근무(의료)기관별 면허 및 취업 현황

- 보수교육 이수상황 등

○ 작성주기

- 연간

○ 추진일정(계획수립, 보고시기, 공표시기 등)

- 계획수립 : 2012년 4월 29일 주기적 면허신고제도 시행

- 보고시기 : 의료인은 3년마다 중앙회에 신고하고 중앙회는 6개월마다 보고

- 공표시기 : 미공표(내부 자료로 활용)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의료인의 자격 및 면허 관리 정책의 기초현황 및 성과 파악을 위해서 상기 통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필요 통계지표는 통계 개발계획과 소관 행정자료 등을 통하여 구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 적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정책(제도)명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입법예고기간	2012. 03. 07. ~ 2012. 03. 27.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과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해야 함
- 아동빈곤위원회 설치 및 운용
  -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
  -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
  3.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규칙]

**제3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빈곤아동과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한다.

1. 빈곤아동 및 보호자 등의 성별·나이·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의 가족관계 및 부양 실태에 관한 사항
  3. 빈곤의 유형, 정도 및 발생 원인 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교육·문화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동 법령의 제정으로 도입되는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정책의 기초현황 파악, 집행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해 빈곤아동 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지표 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정책의 기초 현황 파악, 집행점검 및 성과 평가	○ 빈곤아동 실태 - 성별, 연령, 학력별 빈곤아동 수 - 부양실태, 가족관계, 빈곤유형, 빈곤원인 등 - 복지교육문화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 개발계획 (보건복지부)
	○ 빈곤아동 복지시설 이용자 수 - 연도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요보호아동현황보고 (11734,보건복지부)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빈곤아동 실태조사

##### ○ 조사목적

- 빈곤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 등 아동정책 수립 등에 활용

##### ○ 조사대상(조사대상, 법적근거, 조사체계)

- 조사대상 : 빈곤 아동 및 그 가구
- 법적근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등에관한 법률 제6조
- 조사체계 : 조사원 → 전담조사기관(위탁조사) → 보건복지부

##### ○ 조사사항

- 빈곤아동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일반특성
- 빈곤아동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
- 빈곤유형, 빈곤정도, 빈곤발생원인 등 빈곤특성
- 빈곤아동의 복지·교육 및 문화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욕구 등

○ 작성주기

- 매 5년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계획수립 : 기존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종합실태조사에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 조사시기 : 2013년

- 공표시기 : 조사시행 다음 연도 3월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정책의 기초현황 및 성과 파악을 위해서 상기 통계 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필요 통계지표는 통계 개발·개선계획과 소관 행정자료 등을 통하여 구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 개발·개선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
정책(제도)명	장애아동 복지지원
입법예고기간	2012. 04. 18. ~ 2012. 05. 28.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장애 아동지원센터와 장애아동 지원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함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 장애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특성, 보육 및 교육 현황,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및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관련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함
- 복지지원 제공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신청을 받아서 복지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복지지원 내용을 결정한 후 지원중개센터로 하여금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중개하도록 함

○ 복지지원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고, 장애아동에게 보조기구, 발달재활서비스 및 보육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가족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돌봄지원과 일시적인 휴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경우를 위해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의료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 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방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장애아동 복지지원 정책의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제11조에 규정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할 계획
  - 동 조사를 장애인실태조사에 추가하여 조사할 예정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장애아동 현황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장애아동수 등	장애인실태조사 (11761, 보건복지부)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 - 장애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특성 - 장애아동의 보육 및 교육 현황 -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등	통계 개발계획 (보건복지부)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 ○ 조사목적

- 실태조사 자료 활용을 통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 정책 수립

#### ○ 법적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1조

#### ○ 조사대상

- 장애아동 및 그 가족

#### ○ 조사항목

- 장애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 장애아동의 보육 및 교육 현황, 그와 관련한 욕구에 관한 사항
-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현황 및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및 그와 관련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 현황 및 욕구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작성주기

- 3년마다 실시(2014년부터)

#### ○ 조사체계

- 조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 ○ 추진일정

- 장애인실태조사에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실시

## 라 평가결과

###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장애아동 복지지원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 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제 8 절

# 환 경 부

1. 하수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2.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하수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 가 대상법령

목 적	하수도의 설치관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분뇨 적정 처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
정책(제도)명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
입법예고기간	2012. 01. 11. ~ 2012. 01. 31.
소 관 기 관	환경부 생활하수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하수도의 개념에 하수저류시설 추가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포함 사항 추가
  - 배수구역으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추가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요건 추가
  - 설치하려는 시설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반영 여부 추가
  -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및 저류수의 설치방법에 관한 서류 추가
- 공공하수도 설치기준 추가
  - 강우 및 기후조건, 하수범람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여부
  -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기준
  - 하수 흐름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공공하수도에 연락하지 않도록 함
  - 하수도용 자재를 KS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 공공하수도 사용 공고사항 추가
  -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설계용량 및 저류수 처리방안
-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기준 구체화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거, 하수저류시설, 하수처리구역 전반에 대해서 설정하도록 함
- 기술진단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내용과 개선계획에 관한 자문기구를 운영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등의 자문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신설
  -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규정
  - 공공하수도 공사관리 위탁기관이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 위탁 받은 공사에 대해 기술진단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함



## 주요 개정안

### [대통령령]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강우 등 기후 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4. 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하수관거: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제16조(기술진단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보고한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4와 같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동 법령의 개정으로 도입·변경되는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 정책의 기초현황 및 성과 파악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및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 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하수 침수 피해 현황 - 지역별 피해금액 등	하수도통계 (10607, 환경부)
	○ 공공하수처리 설치현황 - 지역별, 용량별 설치규모 등	
	○ 분뇨처리시설 현황 - 지역별, 용량별 설치규모 등	
	○ 하수관거 현황 - 지역별, 용량별 처리규모 등	통계개발 계획 (환경부)
	○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 지역별, 설치용량별 등	
	○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현황 - 지역별 등록업체수, 기술진단건수 등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 현황

- 보고목적 : 기술진단의 실시여부 파악 및 공공하수도 운영 개선
- 보고대상 및 보고체계  
- 시·도 및 시·군·구 → 환경부
- 법적근거 : 하수도법 시행령 제16조

○ 보고사항

- 유역환경청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수
- 지자체별 기술진단건 수 등

○ 작성(보고)주기 : 매년 1회

○ 추진일정

- 계획수립 : 2월말
- 자료작성 : 3월~6월
- 공표 : 3/4분기 공표

□ 하수저류시설 설치 현황

○ 보고목적 : 공공하수도 설치 국가 지원예산 편성 및 정책자료 활용

○ 보고대상 및 보고체계

- 시·도 및 시·군·구 → 환경부

○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5조

○ 보고사항

- 지역별 하수저류 시설 설치 수
- 시설 용량 등

○ 작성(보고)주기 : 매년 1회

○ 추진일정

- 계획수립 : 2월말
- 자료작성 : 3월~6월
- 공표 : 3/4분기 공표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공공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강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 파악을 위해 상기 통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2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 가 대상법령

목 적	하수도의 설치관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분뇨 적정 처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
정책(제도)명	공공수역 수질보전
입법예고기간	2012. 05. 30. ~ 2012. 07. 09.
소 관 기 관	환경부 생활하수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근거 신설  
· 강우로 인한 미처리 하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하도록 함
- 방류수수질기준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포함
-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지정 근거 신설  
· 시·도지사는 공공수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분뇨수집·운반업의 업무범위 확대  
·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분뇨 수거량 감소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오수관거 맨홀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개정안

###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동 법령의 개정으로 도입·변경되는 공공수역 수질보전 정책의 기초 현황 및 성과 파악을 위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지정현황에 대한 통계지표 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하수처리시설 방류 현황 - 지역별, 시설별, 방류량 등	하수도통계 (10607, 환경부)
	○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현황 - 지역별, 시설별 등	
	○ 수역별 수질오염도 현황 - 연도별, 수역별, 오염도 등	수질오염실태보고 (10601, 환경부)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 지역별, 설치용량별 등	통계개발 계획 (환경부)
	○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지정현황 - 연도별, 지역별 등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보고 통계)

#### ○ 조사목적

- 공공하수도 설치 국가지원 예산편성 및 기초자료 활용

#### ○ 법적근거 : 하수도법 안 제2조 제9호의2

#### ○ 조사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 조사사항

- 지역별 현황, 위치 현황, 용량별 현황, 처리공법 현황 등

#### ○ 작성주기 : 1년

#### ○ 조사체계

- 시도 및 시·군·구 → 상하수도협회 → 환경부

#### ○ 추진일정

- 계획수립 : 전국 하수통계 발간 계획 수립('14년 4월)
- 공표시기 : '14년 4/4분기 공표

### □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지정현황(보고 통계)

#### ○ 조사목적

- 공공하수도 설치, 운영 및 정책 기초자료 제공

#### ○ 법적근거 : 하수도법 안 제34조의2

#### ○ 조사대상 : 전국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 ○ 조사사항

- 지역별 현황, 위치 및 면적 현황, 용량 및 설치 현황, 방류지역 현황 등

#### ○ 작성주기 : 1년

#### ○ 조사체계

- 시도 및 시·군·구 → 상하수도협회 → 환경부

#### ○ 추진일정

- 계획수립 : 전국 하수통계 발간 계획 수립('14년 4월)
- 공표시기 : '14년 4/4분기 공표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공공수역 수질보전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을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 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정책(제도)명	가축분뇨 등의 관리 강화
입법예고기간	2012. 05. 07. ~ 2012. 06. 18.
소관기관	환경부 유역총량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 실시
  - 가축분뇨 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상수원 등 하천의 수질개선 및 보전, 지하수 오염 또는 토양오염 지역의 관리
- 상수원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 수질의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가축분뇨로 인해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추가 지정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사항 개선
  - 임대차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명확히 하여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함
- 퇴비·액비 관리 강화, 배출시설·처리시설이외,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 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 확대실시
  - 현행 준공검사 대상을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에서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 시설로 확대

- 가축분뇨의 처리주체 명시 및 전자 인계·인수제도 도입
  - 시설설치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 하도록 명시
  - 가축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개선명령 기간 또는 비정상 운영기간 중에 처리시설의 응급조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 신설
-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강화, 처리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 신설
  - 재활용시설을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에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규모의 보관 시설을 확보
- 가축분뇨 처리업시설의 허가대상 및 관리강화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중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오 에너지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처리업으로 분류
- 가축분뇨의 수거 자원화 중심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활성화
  - 공공처리시설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시설외에 생산자단체인 지역조합의 장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을 추가



## 주요 개정안

### [법률]

**제7조의2(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의 살포, 가축의 과밀사육(過密飼育) 등으로 인해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분뇨 등의 실태를 조사(이하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이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 분뇨등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의2(가축분뇨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 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설치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기록·보존 및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가축분뇨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동 법령의 개정으로 도입·변경되는 가축분뇨 등의 관리 강화 정책의 기초현황 및 성과 파악을 위해 의사 등 의료인 면허 및 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 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 - 지역별, 시설별 처리용량 등	하수도통계 (10607, 환경부)
	○ 가축사육 두수 현황 - 지역별, 종별 등	가축동향조사 (11423, 통계청)
	○ 가축분뇨 오염원 현황 - 부하량, 오염원별 등	통계개발 계획 (환경부)
	○ 가축분뇨 주변 환경오염도 현황 - 지역별 오염도 등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가축분뇨 등 실태조사(보고 통계)

##### ○ 조사목적

- 가축분뇨의 오염발생원 및 부하량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환경개선 대책 및 오염원 저감방안 마련

##### ○ 법적근거 : 가축분뇨법 제7조의2

- 조사(보고)대상 :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의 살포 등으로 수질 및 토양환경 등 오염된 단위유역의 오염배출 시설 업체 등

##### ○ 조사(보고) 사항

- 가축분뇨 오염원 현황, 처리기술 및 처분현황, 환경부하 산정 등

##### ○ 작성주기 : 1년

○ 보고체계

- 시·도 → 환경부

○ 추진일정

- 계획수립 : '13년 상반기
- 공표시기 : '13년 4/4분기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가축분뇨 등의 관리 강화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을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제 9 절

# 국토교통부

1.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정책(제도)명	임대주택 건설·공급 및 관리
입법예고기간	2012. 01. 31. ~ 2012. 02. 20.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 임대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포함
    -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에 포함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형태로만 인정
    -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포함)
  -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를 구체화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
    - \*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구비
-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체계 도입
  -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의무 규정 및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할 의무 부여

○ 임대주택의 중복입주 확인대상 규정

·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규정

□ 기타사항

○ 임차인 정보의 수집·보유·활용 근거 규정

·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해 제공받은 각종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위반자 과태료 상향

·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위반행위의 경중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수준 차등



**주요 개정안**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9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 여부
3. 오피스텔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제19조의3(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 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제26조의2(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등)** 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 여부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오피스텔에 관한 특례)** 오피스텔은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통령령]

**제2조의2(오피스텔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것

제18조의3(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는 오피스텔을 파악하여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표로 활용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임대주택 재고현황 - 연도별, 지역별, 유형별, 면적별 등	임대주택통계 (11636,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사업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등	
	○ 주택유형별 주택전세가격 동향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30404, 국민은행)
	○ 주택유형별 월세가격 동향	수도권월세가격동향조사 (11671, 국토교통부)
	○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오피스텔이외) 현황 - 연도별, 지역별, 규모별 등	임대주택통계 개선계획 (국토교통부)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오피스텔/오피스텔이외) 현황

- 보고목적 : 임대주택의 재고 및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보고대상 :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 법적근거 :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 보고체계 : 구·시·군 → 시·도 → 국토교통부
- 보고사항 : 임대주택 재고,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 보고주기 : 매년
- 추진일정 : 하위법령 개정('12.4) → 기존통계(임대주택통계) 작성 변경안 마련('12.5) → 변경승인 신청('12.6, 통계청) → 통계조사('13~)
- 공표시기 : '12년 기준 통계자료 조사분부터 적용하여, '13년부터 공표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통계개선 계획에 동의하며, 상기 통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
  -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통계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

##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
정책(제도)명	도시재정비사업 기능 강화
입법예고기간	2012. 04. 20. ~ 2012. 05. 29.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 및 시행
  - 정비사업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가로구역 범위, 층수, 특례 등 규정
  -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을 위한 대상구역을 규정
    -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 ※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유형】

-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추가

-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 인가 취소 규정
  -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해제
  -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해제
  -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와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사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지분형 주택 공급방안 마련
  - 분양대상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공동소유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지분형 주택 시행을 위한 주택의 규모, 공동소유기간, 분양대상자 등 규정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완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완화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투명성 제고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
  - 중요 사항 의결 총회는 조합원 직접 참석비율 강화(10%→20%)
  - 정비사업비가 100분 10(생산자 물가상승률 분은 제외)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임시상가 설치로 세입자 보호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인근에 임시상가 설치
- 용적률 완화 및 사용료 면제
  -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

-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점·사용료를 면제



## 주요 개정안

###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라.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②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⑥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임시상가의 설치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0조의3(지분형주택의 공급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분양대상자 등 지분형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제1조의2(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및 공용주차장 등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본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 4미터 이하인 도로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2. 해당 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것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5조의2(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가. 삭제

나.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한다)의 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필요한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4조의4(지분형주택의 공급)** ① 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급하는 지분형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지분형주택의 공동 소유기간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지분형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 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세대주로서 제11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 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지분형주택의 공급방법·절차, 지분 취득비율, 지분 사용료 및 지분 취득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한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현황 통계지표를 기존 도시 재정비사업현황 통계에 포함하여 조사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및 집행성과파악	○ 도시재정비사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유형별	도시재정비사업현황 (11663, 국토교통부)
	○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구역수 및 면적 등 ○ 주거환경관리사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구역수 및 면적 등	통계개발계획 (국토교통부)
	○ 정비구역 해제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 취소 현황 - 연도별, 지역별	행정자료 (국토교통부)

※ 도시재정비사업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가 됨

### 〈통계개발 계획서〉

#### □ 도시재정비사업 실태조사(보고통계)

- **조사목적** : 전국의 도시재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 현황 파악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조사대상** : 전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 **조사항목** : 도시재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현황
- **작성주기** : 1년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국토교통부 보고
- **추진일정**
  - (계획수립) 지자체 보고자료 조사('13.6월)
  - (조사표개선) 시스템 입력 및 집계표 설계 배포('13. 하반기)
  - (공표) '14년 초
- **참고사항**
  - 기존 도시재정비사업현황 통계에 포함하여 조사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도시재정비사업 기능 강화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제 10 절

# 해양수산부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2.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3. 소금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
입법예고기간	2012. 03. 13. ~ 2012. 04. 03.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업실태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 어선 감척 시행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함
- 감척 대상 어업 고지
  - 어업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어선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등의 사항을 알려야 함
-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음

-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및 조치
  - 감척대상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
  - 감척 희망자가 어선감척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직권으로 어선 감척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
  - 어선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 가능
- 어선선진화 시행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함
-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 어업선진화 사업의 대상어업자에게 해당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경영개선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4조(어업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어업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어업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2.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3.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자원 규모와 연도별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선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선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선진화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업 종류의 통합, 어구의 사용량 조정 등의 추진계획
3. 제2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제16조 각 호에 따른 어업선진화 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업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통계와 정책과의 연계 강화, 정책(제도)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어가소득 현황 - 지역별 어가소득 등	어가경제조사 (10144, 통계청)
	○ 어가 현황 - 지역별 어가수·어업종사자수 등 ○ 어선 보유현황 - 지역별 어선수·톤수 등	농림어가조사 (10145, 통계청)
	○ 수산자원 현황 - 어종별, 어업별 어획량 등	어업생산동향조사 (12322, 통계청)
	○ 연근해어업 현황 - 종류별 어업자·어업종사자수 - 종류별 조업실태·어획량 - 종류별 어구의 표준 수량 - 종류별 익년도 어선감척 희망 척수 - 종류별 어업경영 상태 등	통계 개발 계획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 어업구조개선 자원 조달 및 지원 금액 등 ○ 어선 감척 현황 - 감척 필요어업의 종류, 목표량 - 선령별 어선 현황 - 지역별, 연도별 감척수 및 금액 - 자원 조달 및 지원 금액 등 ○ 어업선진화 현황부 - 어선 통합 계획 및 실적 - 어구 사용량 조정 계획 및 실적 - 어선별 수익액 - 자원 조달 및 지원 금액 등	행정자료 (해양수산부)

〈통계개발 세부계획〉

□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 **조사목적**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법적근거,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어가, 법인, 단체 등
  - 법적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어업실태조사) 및 시행령안 제2~3조
  - 조사방법 : 현지방문 청취조사
    - 연안어업 : 위탁기관 → 시·도지사 → 해양수산부장관
    - 근해어업 : 위탁기관 → 해양수산부장관
- **조사사항**
  -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 현황
  - 조업실태와 어업경영 현황
  - 어구의 표준 수량
  - 익년도 업종별 어선감척 희망 척수 등
- **작성주기** : 매년
- **추진일정** : '13년부터 조사
  - (계획수립) '12년말 → (현장조사) '13년 연중 → (결과보고) 익년 1월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통계개발 계획에 동의하며, 상기 통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
  -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통계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

## 2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
정책(제도)명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관리 및 이용
입법예고기간	2012. 05. 17. ~ 2012. 06. 15.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필요시) 정밀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

#### 【기초조사】

1. 국내 해양·연안지역 등 현지내보전 상태에 있는 해양생명자원의 현황
2.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 현지외보전 상태에 있는 해양생명자원의 현황
3. 국내에서 보관중인 해외 해양생명자원의 보전 및 관리현황
4. 해양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의 서식 및 관리현황 등

#### 【정밀조사】

1.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명자원의 훼손 현황과 그 원인
2. 훼손된 해양생명자원의 복원방법 등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마다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해양생명자원의 조사·등재 등
  - 현지 내 보존 및 현지의 보존 상태에 있는 현황을 조사·수집  
→ 자원명, 학명, 수집자, 수집지 등 해양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
  - 국제기구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 고유종이나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해양생명자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해양생명자원의 분석·평가 실시 등
  -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국내 고유종,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적인 연구 필요성, 유용 도입종, 지식재산권 등 그 보존가치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공동획득) 허가제
  - 관할해역 내에서 연구·개발·생산·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 획득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관할해역 내에서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 등의 탐사·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허가받은 외국인등은 획득한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등 제출 및 조사결과·자료에 대한 분석한 기록 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 기관의 지정기준·절차·갱신·지정 취소 등
- 해양생명자원의 분양승인 및 분양승인의 취소 등
- 해양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등

-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 마련
  -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작성 및 보급 지원 등
- 해양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 신기술 연구·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
- 해외 해양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 해외 해양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해외 해양생명자원기지 구축에 관한 사항 등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 해양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해양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보급하여야 함
- 해양생명자원 전문가심의회회의 구성 등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7조(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마다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보호·관리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양생명자원의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3.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시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4. 해양생명자원의 조사·연구·등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해양생명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양생명자원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7. 해양생명자원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해외 해양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확보를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
9. 해양생명자원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해양생명자원의 정보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조사·등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의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제11조(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 ① 외국인·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관할해역에서 해양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명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농수산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분양승인 등)** ①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해양생명 자원의 경우에는 그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주요 정책에 대한 통계개발·개선계획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관리 및 이용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생명자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생명자원 서식 종류 및 형태</li> <li>- 해양생명자원 확보 증 명, 점 수</li> <li>- 국외 해양생명자원 확보 목록</li> <li>- 해양생명자원의 유전자원 확보수 및 보관형태</li> <li>- 해양생명자원의 DB화 건수</li> <li>- 해양생명자원 관련 전통식식 확보 현황</li> </ul> </li> </ul>	통계개발계획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생명자원 획득 허가, 분양·국외반출 승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승인·신고)건수 및 취소 건수</li> </ul> </li> <li>○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조사, 창업 등 지원분야별</li> </ul> </li> <li>○ 전문인력 양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실시건수, 참여자 수 등</li> </ul> </li> </ul>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해양생명자원 현황

##### ○ 조사목적

-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 조사대상(법적근거, 조사체계)

- 조사대상 : 해양생명자원 서식지 및 보유기관 등
- 법적근거 : 해양생명자원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조사체계 : 조사기관 → 해양수산부장관

○ 조사사항

- 해양생명자원 서식 현황
  - 해양생명자원 서식 종류 및 형태
- 해양생명자원 확보 현황
  - 해양생명자원 확보 종 명, 점 수
  - 국외 해양생명자원 확보 목록
  - 해양생명자원의 유전자원 확보수 및 보관형태
  - 해양생명자원의 DB화 건수
  - 해양생명자원 관련 전통지식 확보 현황

○ 작성주기 : 5년(권역별, 다년도 조사)

○ 추진일정 : '14년부터 조사

- (계획수립) '13년 연중 → (현장조사) '14년 →(결과보고) 전국 조사 완료 후 3개월 내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관리 및 이용”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 건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3 소금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소금산업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
입법예고기간	2012. 08. 03. ~ 2012. 09. 12.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법 제명을 염관리법에서 소금산업진흥법으로 변경
-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및 전망, 소금산업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소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의 양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 제조기술 등의 보급·훈련과 관련 규정·제도 및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추진하도록 함
  - 실용화·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금연구센터의 설치·운영
-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및 기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 등 추진
  -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해외시장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한식세계화의 연계를 강화하며, 천일염 등의 국제규격화를 추진
- 단체의 설립 및 지원
  - 소금사업자 등은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 제조시설의 현대화
  -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생산·제조시설, 포장·용기 및 포장설비 등의 현대화·자동화 등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및 관련 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 전시 및 홍보
  -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보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금전시회 개최,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 소금산지종합처리장 및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운영
  - 소금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
  -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 유통·판매센터(이하 “생산지소금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

- 우선구매 등
  -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 등에 대하여 표준규격품, 우수천일염인증품, 생산방식인증품 및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사업의 장려 및 컨설팅 지원
  -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염전소유주와 임차생산자·위탁생산자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식품업체간의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함
  -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염전원부의 작성·비치 등
  - 염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염전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염전원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함
-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및 허가취소 등
  - 염전을 개발하려는 자, 천일염 등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천일식 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 공업용, 과학용, 의학용, 미용 등 비식용소금을 생산·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천일염생산해역의 보존·관리
  -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이용되는 바닷물·갯벌·기구·자재 등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해역을 식용천일염 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고시하며, 식용천일염 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식용천일염 생산가능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

-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및 표준규격 등
  - 소금의 생산성 및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염전 등의 표준모델과 표준생산 공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천일염의 공정한 거래 촉진 및 유통효율 제고를 위하여 천일염의 표준규격·생산기준·성분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금사업자는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천일염 인증제도
  - 소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천일염인증제도, 천일염생산 방식인증제도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제도를 실시
-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등
  - 소금제조업자가 생산·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 「식품위생법」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금제조업자가 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의무화
-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
  -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준용)를 실시
- 금지행위
  -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부정행위·거짓표시 등 금지, 식용천일염생산 금지해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수출 등의 금지



## 주요 개정안

### [법률]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금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소금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소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소금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
8. 생산자단체의 육성·감독·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금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소금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 그 밖에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자재 및 소금 생산·제조 시설(숙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현대화·규모화·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용기 등의 현대화·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 유통·판매센터(이하 “생산지소금유통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품질검사 등)**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제41조(친환경천일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소금산업을 육성하고 소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정한 해역과 주변 환경에서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한 염전·시설·기구 등을 사용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한 천일염(이하 “친환경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소금산업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 정책의 기본자료를 확보하여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통계개발 필요

○ 협의내용

- 소금산업 진흥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소금산업 진흥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금생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별 생산량 등</li> </ul> </li> <li>○ 소금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금제조 가공설비별 자본금, 종사자 수, 매출액 등</li> <li>- 유통단계별 가격 등</li> </ul> </li> </ul>	통계개발계획 (해양수산부) 소금산업 현황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기관지정 및 교육훈련 실적</li> <li>- 전문인력 양성 기관지정 및 양성 실적</li> </ul> </li> <li>○ 천일염인증품 등 우선구매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종류별</li> </ul> </li> <li>○ 소금 제조업 허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지역별</li> </ul> </li> <li>○ 비식용소금 제조업 신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지역별</li> </ul> </li> </ul>	행정자료 (해양수산부)

- 소금의 품질관리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소금의 품질관리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지정 현황</li> <li>○ 소금 품질검사 현황</li> <li>○ 천일염인증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및 연도별·종류별 인증 실적, 교육실적 등</li> </ul> </li> </ul>	행정자료 (해양수산부)

〈통계개발 세부계획〉

□ 소금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조사목적 : 소금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법적근거, 조사체계)
  - 조사대상 : 소금생산·유통·판매업체, 소비자 등
  - 법적근거 : 소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법 제7조, 영안 제4조)
  - 조사체계 : 표본조사, 현장방문 인터뷰 조사
- 조사사항
  - 염전현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 인력현황 및 수급실태
  - 천일염 제조·가공기술현황
  - 천일염의 생산비
  -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등
- 작성주기 : 격년
- 추진일정
  - 계획수립 : '13년 3/4분기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소금산업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제 11 절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 적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 촉진 및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 실현
정책(제도)명	방송광고의 균형 발전
입법예고기간	2012. 03. 08. ~ 2012. 03. 28.
소 관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방송광고 판매대행 위탁 범위 규정
  - 방송사업자의 판매대행 위탁범위 및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위탁
-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등의 규정
  - 허가유효기간, 변경허가, 재허가 및 허가의 취소, 결격사유 등
  - 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 변경허가, 최대출자자 등 변경승인, 재허가, 허가의 취소에 관한 절차
-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
  -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0/100을 초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
  - 기업집단,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10/100을 초과 소유 하지 못하도록 함
  - 광고판매대행자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함

- 방송광고 수수료 지급의 범위 규정
  - 방송사업자가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는 13/100~16/100이내 지급
  -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는 70/100 ~ 85/100, 라디오 및 이동멀티 미디어의 경우 85/100 ~ 95/100이내 지급
-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근거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균형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하도록 함
-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 매출규모 및 자료제출, 계약체결에 관한 절차를 규정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규정
  -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
- 방송광고 매출 조정 신청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매출 배분 시 공정하게 하며 분쟁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익프로그램 제작 등에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 및 임원구성, 사업, 설립등기 등에 관한 규정
  - 관리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협회 설립 및 사업범위에 관한 규정



## 주요 제정안

### [대통령령]

**제3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하 “광고판매대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에 한함]

5.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등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허가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신청법인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적합여부는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광고 판매물량 확보 방안 등 방송광고판매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 부적합 통보를 받은 법인 제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방송광고 판매계획의 공익성 및 공정성
2. 방송광고 판매물량 확보 방안 등 광고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
3. 방송광고 매출배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결합판매 이외 광고판매지원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에 한함)
4.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 결합판매 이외 광고판매지원 등을 포함한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에 한함)

5. 방송광고 판매시스템 구축운영, 전문 인력 확보,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 자본금의 적정성, 주요 주주의 재정 건전성 등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7.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8.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하여 도입되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관련 정책의 집행과 성과 평가를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 현황, 중소방송 지원 현황’ 등의 통계지표 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별 투자건수, 금액, 지분율 등</li> <li>- 방송사별·매체별 대행건수, 대행금액 등</li> <li>- 방송사별·매체별 수수료 지급액, 지급율 등</li> </ul> </li> </ul>	통계 개발계획 (방송통신위원회)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 현황

##### ○ 조사(보고) 목적

- 방송광고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방송광고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와 방송광고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보고) 대상 및 체계

- 대상 : 광고판매대행자, 방송광고대행자
- 보고체계
  - 광고판매대행자 → 조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광고대행자 → 조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법적근거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자료제출)

○ 조사(보고) 사항

① 광고판매대행자

- 광고판매대행자 일반현황 : 투자금액, 지분율, 종사자 등
- 광고판매 대행 실적 : 방송사별, 매체별 대행건수, 대행금액 등
- 수탁 수수료 현황 : 방송사별, 매체별 수수료 지급건수, 지급액 등

② 방송광고대행자

- 방송광고 대행 실적 : 방송매체별 대행건수, 대행금액 등
- 광고대행 수수료 현황 : 광고대행수수료 지급건수, 지급액 등

○ 작성(보고)주기 : 연간

○ 추진일정

- 통계개발 계획수립 : '12년 이후 매년 3월 이내
- 통계자료 조사시기 : 분기별 자료 수집
- 공표 및 활용 : 매년 12월(내부 행정 자료)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 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제 12 절

# 원자력안전위원회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 적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
정책(제도)명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입법예고기간	2012. 03. 09. ~ 2012. 04. 02.
소 관 기 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수립,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관리
  - 기준치 이상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
  - 등록사항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연간 취급수량, 방사능 농도 등
  - 취급자는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수출입,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및 유통현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규정
  -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사항,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에 관한사항 규정
  -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운영

- 공항·항만,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감시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함
- 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규정
-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 ○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현황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관리

## ○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함

## ○ 벌칙에 관한 사항 규정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 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2.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및 환경의 오염 정도
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일시, 조사자 성명, 출입기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신규 도입에 따른 관련 통계 구비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종류별)</li> <li>-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 현황</li> <li>- 관련시설 주변 방사능 농도 및 오염정도 등</li> </ul> </li> </ul>	통계 개발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실태조사

- 조사목적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파악
- 조사대상
  - 천연방사성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업체와 이를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체 등
- 법적근거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3조, 영안 제17조
- 조사체계
  - 취급업자(등록, 신고, 보고 등) ⇔ 전문기관(실태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사사항
  -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 가공제품 제조·수출입 현황
  - 관련시설 주변 방사능 농도 및 오염정도 등
- 작성주기 : 매년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계획수립 : 동법 시행('12.7월) 이후 조사계획 수립
- 조사시기 : '13년 하반기
- 공표시기 : '14년 상반기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제 13 절

# 금융위원회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전자단기사채 등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유통 및 권리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정책(제도)명	전자단기사채 제도 도입
입법예고기간	2012. 04. 24. ~ 2012. 06. 04.
소관기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운영주체 및 전자단기사채 관리체계
  - 전자단기사채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이 제도의 운영 주체가 되며,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인 또는 권리자는 제도의 운영주체에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거나 권리를 취득하게 됨
-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유통 및 말소 절차
  -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금액 등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인수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계좌등록의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 전자단기사채의 권리이전, 질권 설정, 말소 등은 권리자가 해당 전자단기사채가 등록된 기관에 신청하여 계좌등록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
-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권리 행사 방법
  - 권리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단기사채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계좌를 개설한 기관에 채권자증명서의 발행 등을 신청하여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인 등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단기사채 권리자 보호

-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 등의 종목별 총액이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단기사채 등의 종목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여야 함
- 한국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계좌에 등록된 총액과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총액의 합이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여야 함
-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8조(발행 등록)** ①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금액
2.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단기사채 등의 전액이 납입되었을 때에 그 통지받은 내용을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하고, 발행인관리계좌부와 고객관리계좌부에 각각 기록한 후 그 사실을 해당 금액이 등록된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자 또는 해당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계좌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좌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 내용에 따른 등록 사항을 고객계좌부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와 고객계좌부의 등록, 발행인관리계좌부와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초과분에 대한 말소 의무 등)** ① 계좌관리기관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 등의 종목별 총액
2.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단기사채 등의 종목별 총액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 등의 종목별 총액과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단기사채 등의 종목별 총액의 합
2.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단기사채 등의 종목별 총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말소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말소 의무가 있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소되지 아니한 초과분에 해당하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해당 초과분 발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전자단기사채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예탁결제원은 법령에 의거한 전자단기사채인프라를 '12년 중 구축하여 전자단기사채의 종류, 종목, 금액, 발행사별 발행한도 등의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할 예정이다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기업 단기자금 조달 현황 - 단기차입금, 회사채 등	기업경영분석 (30101, 한국은행)
	○ 기업어음증권(CP) 발행 현황 - 종류, 종목, 금액 등	증권예탁통계 (34801, 한국예탁 결제원)
	○ 전자단기사채 등록 현황 -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발행조건, 발행한도, 미상환 발행 잔액 등	통계개발 계획 (금융위원회)

**<통계개발 세부계획>**

□ 전자단기사채 등록 현황

○ 목적

- 현재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을 전자단기사채로 대체하고 해당 정보를 시장에 공시함으로써 유통시장 발전 및 시장 투명성을 제고

○ 법적근거

-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8조

○ 보고대상

- 전자단기사채

○ 보고사항

-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 발행조건, 발행한도, 미상환 발행 잔액 등

○ 작성주기

- '13년부터 매년

○ 보고체계

-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위원회

○ 추진일정

- 법상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단기사채인프라'를 '12년 중 구축하여 통계지표를 관리

## 라

## 평가결과

###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제 14 절

# 소방방재청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명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및 사고발생 축소
입법예고기간	2012. 02. 24. ~ 2012. 03. 15.
소관기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연도별 계획 수립·시행
  -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수립, 연도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실태조사 실시
  -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유해인자 분석, 질병 발생원인 등에 관한 사항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소방전문치료센터 설치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소방전문치료센터(중앙·지역)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도록 함

-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
-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료·직업상담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건안전교육 및 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를 규정을 작성하여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정기 실태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소방공무원 진료,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 ③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및 사고발생 축소를 위한 현황 및 성과 파악을 위해 동 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지표 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실태조사 - 질병발생원인, 근무환경, 사망부상사고 발생원인,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 실태, 복지시설 등	통계 개발계획 (소방방재청)
	○ 소방공무원 현황 - 성별, 연령별 소방공무원 수	행정자료 (소방방재청)
	○ 소방공무원 사고현황 - 유형별(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사고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119 구조구급 활동실적보고 (15602, 소방방재청)
	○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현황 - 전문치료센터 지정업체 수, 진료인원 수, 지정취소 업체 수	행정자료 (소방방재청)
	○ 건강 프로그램 운영현황 - 건강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결과 추이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가능 (소방방재청)

**<통계개발 세부계획>**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실태조사**

○ 조사목적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7조

○ 조사대상

- 소방공무원

○ 조사항목

- 질병발생원인, 근무환경, 사망·부상사고 발생원인,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 실태, 복지시설 등

○ 작성주기

- 5년 단위로 조사('12년 4/4분기 ~ '13년 1/4분기 중 예정)

○ 조사체계

- 시도 소방본부 → 소방방재청(보고서식 의거 작성제출)

○ 추진일정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추이를 보아가며 추진계획 수립 등을 결정할 것이며, 조사결과는 미공표(내부 자료로 활용)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및 사고발생 축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현황 및 성과 파악을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제 15 절

# 산 림 청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2. 산림보호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산림교육 활성화
입법예고기간	2012. 03. 14. ~ 2012. 04. 03.
소관기관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산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산림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및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산림교육전문가 운영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
  - 산림프로그램을 운영 및 개발·보급하려는 자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하면 산림청장이 인증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라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조성·운영주체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숲사랑소년단
  - 청소년을 위하여 숲사랑소년단을 설립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숲사랑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등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숲사랑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숲사랑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숲사랑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숲사랑소년단의 시설·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산림교육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산림교육실태조사(가칭)’를 개발하여 통계지표를 활용할 예정이며, 실태조사는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 예정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산림교육 활성화정책의 기초현황 및 성과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양성기관수, 시설, 인력 현황</li> <li>- 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배치현황</li> <li>- 프로그램 보급(인증취소) 및 운영현황 등</li> </ul> </li> <li>○ 유아숲체험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수, 인력, 교육실적 등 운영현황</li> </ul> </li> <li>○ 산림교육센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수, 인력, 교육실적 등 운영현황</li> </ul> </li> <li>○ 숲사랑소년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수 및 인력 등 운영현황</li> </ul> </li> </ul>	통계개발계획 (산림청) 산림교육실태조사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산림교육 실태조사

##### ○ 조사목적

- 산림교육활성화 종합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조사대상(조사대상, 법적근거, 조사체계)

- 조사대상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사랑소년단 등
- 법적근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조사체계 : 시·군·구(국유림관리소) → 시·도(지방산림청) → 산림청

○ 조사사항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운영현황
- 산림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현황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배치현황
- 유아숲 체험원 시설 및 운영현황
- 산림교육센터 시설 및 운영현황
- 숲사랑소년단 시설 및 운영현황 등

○ 작성주기

- 매년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계획수립 : '13년 1/4분기
- 조사시기 : '13년 3/4분기
- 공표시기 : '13년말

##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산림청에서 제시한 통계개발 계획에 동의하며, 상기 통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
- 필요 통계지표는 통계 개발계획과 소관 행정자료 등을 통하여 구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2 산림보호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방제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산림유전자원 보호와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
입법예고기간	2012. 05. 18. ~ 2012. 06. 28.
소관기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관리구역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립공원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조사·보존 및 연구, 산림병해충의 방제, 산불예방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람의 출입을 제한
-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효과성 평가
  -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

- 산사태예방 장기 및 연도별 대책 수립·시행
  - 산림청장은 5년마다 전국산사태예방 장기 및 연도별 대책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5년마다 지역산사태예방 장기 및 연도별 대책을 수립·시행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 산림청장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예측정보의 제공
  -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장은 기초조사의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및 해제
- 산사태예방 교육 및 신고
  -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사태예방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수립·실시
-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및 산사태 대응의 평가·분석
  -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시행



## 주요 개정안

###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유전자원의 분포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망덤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망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사태예방을 위한 예산·인력·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사태예방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산사태예방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사태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산림유전자원의 보호와 산사태예방·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산사태 예방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의 통계지표 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 산림유전자원 보호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산림유전자원 보호정책의 기초 현황 파악, 집행점검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유전자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지역별, 종류별</li> </ul> </li> <li>○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지역별</li> </ul> </li> </ul>	행정자료 (산림청)

-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 정책의 기초 현황 파악, 집행점검 및 성과평가	○ 산사태 우려지역 현황 - 연도별, 지역별	통계개발계획 (산림청)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 산사태 피해현황 - 연도별, 지역별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 - 연도별, 지역별 ○ 산사태 예방교육 현황 - 연도별 전문인력 양성현황	행정자료 (산림청)

〈통계개발 세부계획〉

□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

○ 조사목적

-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

○ 조사대상(조사대상, 법적근거, 조사체계)

- 조사대상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 조사체계 : 위탁조사(사방협회, 산림조합) → 산림청

○ 조사사항

- 산사태 우려지역의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정도
- 산사태 우려지역의 지형·임황 등 인자별 특성

○ 작성주기

- 매 5년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계획수립 : 2013년 상반기
- 조사시기 : 2013년 하반기
- 공표시기 : 미공표(내부 자료로 활용-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라 평가결과

###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산림유전자원의 보호와 산사태예방·대응 및 복구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필요 통계지표는 통계 개발·개선계획과 소관 행정자료 등을 통하여 구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 개발·개선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3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 적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입법예고기간	2012. 10. 01. ~ 2012. 11. 20.
소 관 기 관	산림청 산림정책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 산림청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흡수원 정보와 통계를 작성하여 산림탄소 정보통계 체계 구축
-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 및 관리
  -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을 위해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보호지역 관리, 재해방지 관리, 목제품 이용증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산림황폐화 방지 등을 실시하며 필요시 기술지원
- 산림탄소 상쇄
  -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으로 증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상쇄 실적으로 활용

- 산림탄소센터의 지정 및 육성
  - 산림청장은 산림흡수원 및 흡수량 정보관리를 위해 산림탄소등록부 등 산림탄소상쇄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기관을 지정·관리
-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 산림탄소상쇄 방법론 설정
  - 산림탄소상쇄 운영 표준과 탄소흡수량 측정·보고·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수행
- 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활동의 지원
  - 전문인력을 육성 및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유도를 위한 홍보
  - 지역별로 특성화된 탄소흡수원 유지·증진활동 및 연구·개발에 지원
  - 탄소흡수량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서비스 산업 육성에 지원
- 국제협력 증진
  -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지원
  - 양자 및 다자간 기후변화 대응에 지원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산림부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자원조달, 교육·홍보 등 효과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
2. 탄소흡수원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적
2.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 산림관리 실적
3. 제13조에 따른 목제품 유통 및 이용 실태
4. 제14조에 따른 목재산업 에너지 정보
5.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실적
6. 제16조에 따른 산림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실적
7. 제18조에 따른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
8. 그 밖에 산림탄소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의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를 측정하고, 개인정보, 기업경영상 비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보고·검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흡수·배출 계수,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측정·보고·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국내 인력 양성 및 해외 협력과 국내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구축하고 관련자료를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 정보와 통계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코자 통계개발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탄소흡수원 현황 - 시도별·단위별·임목, 식생, 벌근, 고사목, 토지 등	국가산림자원조사 (13614, 산림청)
	○ 연간 총 산림탄소 흡수량·배출량 ○ 연간 순 산림탄소 흡수량·배출량	통계개발·개선 (산림청) 산림탄소 계수 조사
	○ 농업, 흡수원, 폐기물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배출통계 (11518,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내외 원목 수급현황 ○ 산업별 목재사용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종류별, 사업장별 등	목재이용실태조사 (13634, 산림청)
	○ 바이오가스, 임산연료, 폐목재, 우드칩 등의 사용량 및 단위당 발열량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조사 (33701, 에너지관리공단)
	○ 산림탄소 증진실적 - 신규조림 등 산림관리 실적 ○ 산림탄소상쇄 실적 ○ 특성화학교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실적	행정자료 (산림청)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산림탄소 계수 조사

#### ○ 조사목적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조사대상(조사대상, 법적근거, 조사체계)

- 조사대상 : 국내 산림 640만ha 모집단
- 법적근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사체계 : 연구개발 및 보고(국립산림과학원) → 산림청

#### ○ 조사사항

- 수종별, 목질부, 바이오매스, 고사유가물, 토양탄소의 Non-CO<sub>2</sub> 산출 계수
- 산림탄소 배출량·흡수량 산정을 위한 계수
- 연간 총 산림탄소 배출량·흡수량
- 연간 순 산림탄소 배출량·흡수량

#### ○ 작성주기

- 매년

####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계획수립 : '12년 3/4분기

## 라 평가결과

###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 가 대상법령

목적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목재문화 진흥, 목재이용 활성화
입법예고기간	2012. 01. 23. ~ 2012. 03. 04.
소관기관	산림청 목재생산과

###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종합계획 등의 수립
  -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 종합계획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계획과 전국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구성
  -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

-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공표 및 인증·인정제도 운영
  -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여 매년 측정·공표하여야 하고, 목재교육프로그램, 전통 목재제품, 목재제품명인, 지역간벌재 이용제품 등에 관하여 인증·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목재문화지수의 향상, 탄소저장량의 측정 등 목재이용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
- 목재제품의 안정성 평가 등
  -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 목재생산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 확대를 권장
  -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및 유통질서 확립,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목재산업관련 기술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인력의 양성 및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 운영
  -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 실시 및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목구조물의 안정성 도모, 질적수준 향상 및 목구조 기술의 발전 촉진.



## 주요 제정안

###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 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 실질평가( ○ )
- 요청의견 : 통계에 기반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현황 및 가격동향”과 “목재문화지수 조사”의 통계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 목재문화 진흥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목재문화 진흥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목재문화 지수	통계개발계획 (산림청)
	○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현황 ○ 전통목재제품·목재제품명인 인증현황 ○ 지역간벌재 이용제품 인증현황	행정자료 (산림청)

### - 목재이용 활성화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목재이용 활성화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국내외 원목 수급 현황 ○ 목재의 용도별 수요량, 공급량	목재수급통계 (13605, 산림청)
	○ 목재사용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종류별, 사업체 수 등	목재이용 실태조사 (13634, 산림청)
	○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현황 및 가격동향	통계개발계획 (산림청)
	○ 안정성 평가 결과 현황 ○ 신기술 지정 현황 ○ 우수제품의 우선구매실적 ○ 목재제품 품질인증 현황 ○ 목재생산업자 등록 현황 ○ 전문인력 양성 현황 ○ 목구조기술자 자격취득 현황	행정자료 (산림청)

## 〈통계개발 세부계획〉

### □ 목재 문화지수 조사

#### ○ 조사목적

- 지역별 목재문화 인프라 구축 및 목재문화 인식제고

#### ○ 조사대상(조사대상, 법적근거, 조사체계)

- 조사대상 : 지역별 목재제품 생산자 및 이용자
- 법적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조사체계 : 목재문화진흥회 위탁 → 산림청

#### ○ 조사사항

- 지역민의 목재문화 인식도

#### ○ 작성주기

- 매년

####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계획수립 : '13년 전문기관의 용역 연구 후

### □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현황 및 가격동향

#### ○ 조사목적

- 종합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조사대상(조사대상, 법적근거, 조사체계)

- 조사대상 : 목재 및 목재제품관련 사업체
- 법적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사체계 : 한국임업진흥원 등에 위탁 → 산림청

#### ○ 조사사항

-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현황 및 가격동향 등

#### ○ 작성주기

- 매년

####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계획수립 : '13년 전문기관의 용역 연구 후

## 라 평가결과

###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부 록

### **통계기반 정책평가 개요(영문) 통계 개발·개선 사례(목록) 통계정보 이용방법**

부록은 통계기반 정책평가 개요에 대해 영문을 수록하였고 2012년 통계개발·개선 사례(목록)와 통계정보 이용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통계 개발·개선 계획은 각 부처의 최종 확인을 거쳐 향후 중기 국가통계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관리한다.

# Contents

## Brief Description on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A. Objectives and Significance .....	211
B. Focused Organizations and Decrees .....	212
C. Main Evaluation Systems and Procedures .....	212

# Brief Description on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 A Objectives and Significance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has been established to support offices or departments where new statistics are in need upon the establishment or amendment of laws by the Central Administration.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obtaining required statistics lies on each department, and Statistics Korea supports the process through policy Evalua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 Statistics Korea examines whether the indicators that a department needs to execute and evaluate newly established or amended laws are fully prepared, and if the improvement plans that each department has designed for its statistics are suitable. Statistics Korea also provides recommendations on necessary statistics to help the corresponding departments work with Statistics Korea to improve and develop their statistics.

The main objective of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 policy b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statistics and the policy.

## **B Focused Organizations and Decrees**

### **1. Focused Organizations**

The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applies to ever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 **2. Decrees for Evaluation**

Decrees for evaluation include all laws established or amended by the Government and enforced by the President, with the exception of decrees that do not require statistics as well as decre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where evaluations cannot be reasonably applied. These exceptions are provided annually by the 「Management Principles for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

The decrees established the legislative assembly are evaluated during the amendment process to help corresponding departments obtain necessary statistics.

## **C Main Evaluation Systems and Procedures**

### **1. Evaluation Systems**

As a primary process, the central administrative offices that establish or amend decrees are obligated to request a pre-evaluation or an evaluation from Statistics Korea when seeking analysis from related departments. Statistics Korea conducts evaluations upon the request, and reports the result to each of the departments.

Pre-evaluation is performed to verify if statistics are require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management, while evaluation is performed to examine how well the necessary indicators have been prepared, whether they are acceptable or not, and to investigate if their improvement plans are appropriate.

## 1) Pre-Evaluation

Pre-evaluation is a process to verify the necessity of statistics for a new policy that is being established/ amended by the Government. This process reduces the burden from the evaluation conducted by each of the corresponding departments.

The Pre-evaluation process for a decree established/ amended by the Government can be omitted if the necessity of statistics is confirmed in a decree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offices and can proceed to request an Evaluation.

Upon the result of the Pre-evaluation, an Evaluation is recommended afterwards if statistics are necessary, otherwise the process is finalized. Pre-evaluation results are classified in one of the five categories below.

### ① Not Appropriate for Evaluation

: the policies implemented based on corresponding decree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Evaluation.

### ② Remission of Evaluation

: statistics-based evaluation is appropriate and necessary for the policy, but the newly changed sections in the policy following amendment/establishment are not appropriate for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 ③ Evaluation during Drafting Process

: when the legislation process needs to be prompt or a policy is required to be specified, the evaluation is recommended to be conducted during the drafting process.

### ④ Statistical indicators Use Recommended.

: when necessary statistics are properly prepared or have a high probability of being prepared by relevant decrees afterwards, although the policies implemented based on corresponding decrees are an appropriate for Evaluation

### ⑤ Appropriate for Evaluation

: where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is necessary with a changed policy through the decrees established/amended by the Government.

## **2) Evaluation**

As the core process of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the Evaluation verifies how well necessary indicators have been prepared along with the outcome of acceptability and acceptable and how appropriate the improvement plans.

The evaluation result is classified in one of the four categories below.

### **① Not Appropriate for Evaluation**

: the policies implemented based on corresponding decree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Evaluation.

### **② Statistical indicators Use Recommended.**

: when necessary statistics are properly prepared or have a high probability of being prepared by relevant decrees afterwards

### **③ Statistical Development/Improvements**

"Statistical Development/Improvements" is given when there is agreement between Statistics Korea and the corresponding department on statistical development/improvements.

The department submits specific improvement plans to Statistics Korea, and Statistics Korea includes its own plans as one of its medium-range development/improvement project for national statistics.

### **④ Disagreement on Development/Improvements**

If necessary statistics are missing or short, a recommendation fo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relevant statistics is made, especially in cases in which there have been disagreement between the concerned department and Statistics Korea.

In this case, the department is required to attach the evaluation results of Statistics Korea when they report this at a Cabinet meeting.

## **2. Evaluation Procedure**

### **1) Applicati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offices in charge of amendments are obligated to fill out an application form for the (Pre)Evaluation and need the request to Statistics Korea, when seeking analysis of amended/newly developed sections with corresponding departments. The application forms must be processed by the staff of the offices of each of the corresponding departments.

※ required documents : In addition to the application form, the following documents need to be submitted; full text of the decree, description of amended/ newly developed sections, documents containing comparisons with previous contents, and references for related polices.

### **2) Announcement of Evaluation Results**

Statistics Korea is obligated to complete a Pre-evaluation within 10 days after receiving on application, and complete an Evaluation by the end of the announcement period for amendments, then notify the results to the concerned departments.

### **3) Appeal of objections**

The Central administrative offices can bring up objections within 7 days after receiving their assessment results.

In these cases, Statistics Korea conducts a re-evaluation and announces the result to the offices within 7 days for the pre-evaluation and within 20 days for evaluation.



## Flow Chart for Evaluation Procedure

### 1. Request for Pre-Evaluation

- Submit request form for pre-evaluation while consulting with related organizations
- Forms to submit : Request form, complete document for corresponding decree and descriptions on changed/newly established sections
- Submit papers through corresponding department

### 2. Implementation and Report

- Within 10 days after submission of request form
- Or upon completion of announcement of legislation, if the evaluation result is categorized as "statistical indicators recommended for use"

### 3. Appeal for Re-Evaluation

- Appeal should be submitted within 7 days after receipt of evaluation result
- Re-evaluation should be conducted within 7 days after receipt of appeal

### 4. Request for Evaluation

- Request should be submitted within 15 days after receipt of pre-evaluation result
- Required materials: request form, plans for statistical development or improvement

### 5. Implementation and Report

- Process should be completed by the time of advanced notice of legislation
- Notify interim results by the end of pre-announcement
- Complementary process through cooperation with Statistics Korea

### 6. Appeal for Re-evaluation

- Application: within 7 days upon result notification
- If mutual agreement is not made, the agenda is transferred to National Committee on statistics.

### 7. Implementation of the Result

- If the result is categorized of “**Improvement recommended**”, submit the relevant decree with comments by the Commissioner of Statistics Korea to the Cabinet conference.
- Submit 'implementation plan' on the sections that required improvements.

## [부록] 통계 개발·개선 사례(목록)

소관 부처	법령 명	통계 개발·개선 내용	페이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안	(사회적)협동조합 수, 조합원 수, 직원수, 자본금, 인력, 매출액 등	19
미래창조과학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총매출액, 종사자수, 자본금, 영업비용 등	27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부개정안	학연교수 현황, 산학연간 인력 공동활용 현황, 산학연 간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실적, 기술 지주회사 기술사업화 실적 등	33
"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	지역별 수석교사 자격 수여자 수, 수석교수 수 (국·공·사립별, 지역별), 원아수별 및 학급수별 수석교사 채용현황(국·공·사립별, 지역별)	39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유치원 정원 수, 유치원 취원 희망여부, 공사립 유치원 및 단병설 유치원 선호 수요 등	42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 제정안	설립주체별, 운영주체별 작은도서관 수, 도서 자료수, 도서관면적, 좌석수, 직원 및 예산 현황, 개관일수, 개관시간, 이용자수, 대출권수 등	49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게임단 및 프로그래머 수, 연도별, 지역별 대회 현황 및 관람객 수, 종목 현황 등	53
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쌀가공 업체 및 종사자 수, 쌀가공품 원료 공급 및 사용량, 쌀가공품 생산유통판매량, 쌀가공품 수출입량 등	61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연도별, 지역별, 작물별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지원 농가 수 및 금액, 연도별, 지역별, 작물별 부적정한 보조금 회수 농가 수 및 금액 등	68

소관 부처	법령 명	통계 개발·개선 내용	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내외 계량측정 산업 현황, 계량측정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계량측정관련 전문인력의 현황, 계량측정기술의 사업화 현황 등	75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연도·지역·성·연령·거주형태별 노숙인 수, 노숙인 등 장애 및 질병사항, 주거·급식·의료·고용 등 노숙인 지원 사항 등	81
”	의료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연도별, 지역별, 성별, 의료(근무) 기관별 취업자 수, 보수교육 이수상황 등	86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성별, 연령, 학력별 빈곤아동 수, 부양실태, 가족 관계 빈곤유형, 빈곤원인, 복지·교육·문화 서비스 이용 현황 등	90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시행령 제정안	장애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아동의 보육 및 교육 현황,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현황,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등	94
환경부	하수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지역별, 설치용량별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지역별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 수, 기술진단건수 등	101
”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지역별, 설치용량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연도별, 지역별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지정 현황 등	106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하량, 오염원별 가축분뇨 오염원 현황, 가축분뇨 주변 환경오염도 현황 등	111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	연도별, 지역별, 규모별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오피스텔/오피스텔제외) 현황 등	119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주거환경관리사업 현황 등	124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연근해어업 종류별 어업자 어업종사자수, 조업실태·어획량, 어구의 표준 수량, 익년도 어선 감척 희망 척수, 어업경영 상태 등	135

소관 부처	법령 명	통계 개발·개선 내용	페이지
해양수산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해양생명자원 서식 종류 및 형태, 해양생명자원 확보 증명, 점 수, 국외 해양생명자원 확보 목록, 해양생명자원의 유전자원 확보수 및 보관형태, 해양생명자원의 DB화 건수, 해양생명자원 관련 전통지식 확보 현황 등	140
"	소금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안	용도별 소금생산량, 소금제조 가공설비별 자본금, 종사자 수, 매출액, 유통단계별 가격 등	14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사업자별 투자건수, 금액, 지분율, 방송사별 매체별 대행건수, 대행금액, 방송사별·매체별 수수료 지급액, 지급율 등	157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제정안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 현황, 관련시설 주변 방사능 농도 및 오염정도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165
금융위원회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발행조건, 발행한도, 미상환 발행 잔액 등 전자단기사채 등록 현황	171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안	질병발생원인, 근무환경, 사망·부상사고 발생 원인,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 실태, 복지 시설 등	179
산림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현황, 유아숲체험원 현황, 산림교육센터 현황, 숲사랑소년단 현황 등	187
"	산림보호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	연도별, 지역별, 산사태 우려지역 현황	192
"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연간 총 산림탄소 흡수량배출량, 연간 순 산림탄소 흡수량배출량 등	198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목재문화지수,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현황 및 가격동향 등	203

# 통계정보 이용방법

## ◆ 통계청

- **통계정책시스템** (http://narastat.kr/pms/index.do) 통계정책, 통계심사, 통계조정, 통계품질
-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요청서 서식, 요청서 작성 및 평가사례 ☎ 042-481-2110  
http://kostat.go.kr/policy/psd
  -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DB자료 서비스 ☎ 042-481-2391  
http://kosis.kr
  - 어린이 통계동산 초등학교 교과내용의 통계 ☎ 042-481-2348  
http://kostat.go.kr/kids
  - 통계쇼핑몰 간행물, CD-ROM 구입 ☎ 031-759-0167  
http://kostat.go.kr/shopmall
  - 통계청콜센터 통계자료 문의 및 안내 ☎ 02-2012-9114 (국번없이 110)  
http://kostat.go.kr >민원과 소통
- **도서관** (http://lib1.kostat.go.kr)
  - 대전도서관 통계자료 열람, 간행물 구입 ☎ 042-481-2407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3층
  - 서울도서관 통계자료 열람 ☎ 02-3446-4428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논현동 71)  
서울세관 별관1층
  - 통계센터 도서관 통계자료 열람 ☎ 042-366-6153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빌딩 4층
- **정보서비스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관련 문의 ☎ 042-481-2334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1층

## ◆ 통계상품 위탁 판매처

- **한국통계진흥원** 간행물, CD-ROM 구입, 정기간행물 신청 ☎ 031-759-0167(202)  
http://www.stat.or.kr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85(태평1동 6454번지)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 4층
- **교보문고** 간행물, CD-ROM 구입 ☎ 1544-1900  
http://www.kyobobook.co.kr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
- **경제서적** 간행물 구입 ☎ 02-736-0640  
서울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지하 161호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간행물 구입 ☎ 02-394-0337  
http://gpcbooks.co.kr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 **한국정보서적** 간행물 구입 ☎ 02-376-6030  
서울 은평구 수색동 329-5

## 2012년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사례집

---

발행일 | 2013년 9월

발행처 | 통계청

주 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전 화 | 042)481-2083 (통계심사과)

팩 스 | 042)481-2550

인 쇄 | 강문인쇄사

전 화 | 042)226-4722~3

